

3. 생활에서 많이 쓰는 전화번호를 알아봅시다.

전화번호를 모를 때	
불이 났을 때	
응급환자 발생	
일기예보	
범죄신고	
현재 시각	

6) 종사자용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성-종사자

단계	세션	주제	목표	주요 내용	교육방법
인권의식키우기	1	인권 들여다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고계임을 통해 인간의 특징을 살펴보고, 인간 존엄성과 인권과의 관련성을 알아본다. - 내가 알고 있는 인권의 개념을 객관화해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존재 표현하기 - 인간 존엄성과 인권과의 관련성 알아내기 - 인권 개념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크레이션 - 창의적 표현
	2	인권제대로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역사와 의미, 범주 등에 대해 전반적인 강의식교육으로 이해한다. 	- 인권에 대한 기본이해	- 강의식 교육
	3	인권과 친해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개념이 어려운 것이 아닌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미 가까이 와 있음을 확인해 보고,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행하고 있는 인권존중 모습 찾아내기 - 인권과 나의 위치 살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 - 자아 탐색
	4	인권온도 측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온도를 측정하면서 시설의 인권분위기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목표, 전략 및 책임을 설정하여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인권분위기 평가하기 - 결과에 따른 토론하기 	- 평가
	5	무엇이 문제일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을 정의하고,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를 제시하여 침해하는 사람들이나 영역 혹은 상황을 찾아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정의하기 - 인권침해상황그리기 	사례연구
	6	갈등 해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의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갈등 요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상황에서의 갈등요인과 해결방안 모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 발표
	7	인권지킴이 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갈등요인의 확인내용을 정리한 후 원탁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탁토론을 통한 해결방안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 발표
	8	선물준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애인의 입장에서 어떤 인권의 보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고, 그것이 지켜지기 위한 선물을 준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애인 대변하기 - 시설장애인에게 필요한 것들 - 시설장애인에게 선물하기 	- 창의적 표현
	9	시설 인권 실천약속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각종 인권선언문을 분석하고, 그 공통점을 추출한 후, 실천 가능한 시설 인권강령을 함께 만들어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낭독 “장애인 권리협약” - 대한민국 헌법 - 시설 인권실천약속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 교육 - 프로젝트
	10	인권씨앗 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제 종결할 때이다. 잊지말아야 할 단어가 있다면 존중이다. 존중의 의미로 인권의 싹을 틔워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존중의 의미 - 인권싹 틔우기 	창의적 표현

1 인권 들여다보기

- ▷ 인권영역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 핵심주제 : 인간의 특성과 인권의 의미 찾기

□ 프로그램 목표

- 게임을 통해 인권교육이라는 딱딱한 분위기를 순화시키는 과정이다.
-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있는 실제 생활상황에 대해 민감성을 갖게하고, 잠재되어 있는 문제의식을 일깨우는 데 있다.
- 사회구성원 누구나 평등한 존재로서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깨닫도록 한다.

□ 프로그램 개요

모둠유무	무(전체참가)	소요시간	90분
준비물	〈활동자료 1, 2〉, 필기구, 실루엣을 표현할 하얀 도화지(전지를 가로로 길게 4등분함), 가위, 자석, 테이프, 매직, 간단한 상품		

□ 수행방법 및 역할

프로그램 내용	수행방법	진행자 역할	참여자 역할
1. 빙고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들을 선호하는 방법으로 빙고 게임을 한다. - 1~50 사이의 숫자를 이용해 4×4 빙고판을 만든다. - 모둠이 돌아가면서 숫자를 부른다. -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한 줄, 두 줄, 블랙 빙고 등을 만들어내면 이기는 것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탕과 같은 간단한 상품을 제공하기 	
2. 인간 상징 빙고판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자료 1〉의 빙고판에 인간의 상징을 적어 넣은 빙고판을 만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을 나타내는 특징을 찾는다. 	

프로그램 내용	수행방법	진행자 역할	참여자 역할
3. 인간 상징 빙고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자료 2〉에서 준비한 빙고판을 이용하여 빙고 게임을 한다. 요령은 〈활동자료1〉의 숫자 빙고와 동일하다. - 진행자는 칠판에 전지를 붙이고, 참가자들이 인간의 상징을 부를 때마다 매직으로 적는다. 		
4. 내가 생각하는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활동자료 3〉의 답을 한다. - 게시판에 색연필로 아름답게 그려 게시한다. - 진행자는 모둠별로 답의 내용과 그렇게 발표한 근거를 발표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개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 진행시 유의사항

-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간의 개념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 구체적이고도 섬세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추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구체적으로 사고를 전개할 수 있도록 진행자가 지도한다.
- 인권교육 프로그램 소개는 장황하지 않도록 한다.

□ 진행 시나리오

순서	진행 멘트	비고
도입	<p>- 모둠별 자리배치와 프로그램 소개하기</p> <p>지금부터 여러분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할 교사 000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기본적 권리, 인권에 대해 앞으로 10시간동안 여러 활동을 통해 배우면서 인권 개념이 여러분의 일상생 활에 배고, 나아가 여러분이 인권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역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여러분의 인권 상황이 어떠하고, 여러분의 인권 의식은 어떠한지 간단한 방법으로 점검하고,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인권교육프로그램의 목표가 무엇인지 오감을 통해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p>	
활동1	<p>-〈게임〉 빙고 게임</p> <p>빙고 게임 좋아하나요? 오늘은 빙고 게임을 해 봅시다. 1~50까지의 숫자를 이용해 4×4빙고판을 만들 어 보세요. 당연히 자연수만으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너무 고민하면서 쓰지 마세요, 어차피 확률은 같답니다. 빙고판을 다 준비한 모둠은 박수 세 번을 쳐서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 주세요. (빙고판을 준비할 시간을 준다. 모든 모둠이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 준비 되었지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줄을 지운 모둠이 '빙고!'를 외칠 수 있답니다. 가장 먼저 빙고판을 준비한 모둠이 먼저 숫자를 부르고 그 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숫자를 부르겠습니다.</p> <p>(빙고가 나오면) 축하합니다. 여기 상품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니까 한번만 더 해볼까요? 이미 빙고를 한 팀을 빼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숫자를 불러 보세요. (다시 빙고가 나오면) 예, 축하합니다. 빙고를 외치지 못한 모둠도 너무 섭섭해 하지 마세요, 다음 기회가 또 있답니다.</p>	
활동2	<p>-〈제작〉 인간의 상징 빙고판 만들기</p> <p>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이라는 존재를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모둠별로 인간을 특징지울 수 있는 상징들을 찾아 문장이 아닌 그림으로 아홉 개의 빙고 칸을 채웁니다. 예전대, 인간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옷을 그리고, 책을 볼 수 있으니까 책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단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상징을 그리셔야 합니다. 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요령은 인간은 심오한 존재니까 다양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유리하실 것이고, 반은 상대가 부를 만한 것을 적고 반은 상대가 부를 확률이 적은 것을 적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부를 때 상대는 못 지우고 자기 모둠의 것만 지우게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빙고판이 다 준비된 모둠은 박수를 세 번 쳐서 준비가 다 되었음을 알려 주십시오.</p>	
활동3	<p>-〈게임〉 인간 상징 빙고 게임</p> <p>준비 되었지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줄을 지운 모둠이 '빙고!'를 외칠 수 있답니다. 가장 먼저 빙고판을 준비한 모둠이 먼저 숫자를 부르고 그 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부르겠습니다. (빙고가 나오면) 축하합니다. 여기 상품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니까, 한번만 더 해볼까요? 이미 빙고를 한 팀을 빼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불러 보세요. (다시 빙고가 나오면) 예, 축하합니다.</p>	
활동4	<p>-〈탐구〉 내가 생각하는 인권</p> <p>인권이란 문자 그대로 사람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한 정의만으로는 그 뜻이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은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맨 먼저 두 가지 활동을 먼저 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는 인권의 개념을 정리한 '읽기자료 1'을 읽어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토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권의 의미를 '활동자료 3'의 예문처럼 정리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읽기자료 1'을 읽어보시고, '활동자료 1'의 지시문에 따라 내가 생각하는 인권을 간단한 그림과 함께 표현해 보세요. 모둠 별로 답을 하시고, 답이 이루어진 분은 칠판에 이를 예쁘게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p>	
정리	<p>- 소감 나누기</p> <p>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빙고게임을 하면서 나온 인간을 특징지울 수 있는 많은 상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온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인간의 완전성을 위해서는 칠판에 적힌 모든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인권의 개념입니다. 이 인간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모습을 마음에 간직한 채로 다음 시간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앞에 언급된 인간을 특징지울 수 있는 상징들을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첫 시간으로서 인권의 의미,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금부터 진행하게 될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간 존엄성에 기반해 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되었으며, 전체 10시간,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장인 "마음열기"를 하였고, 앞으로 "사람, 인권, 인권교육", "실천속의 인권 찾기", "맺음"의 순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p>	

【활동자료 1】 빙고게임

* 빙고 게임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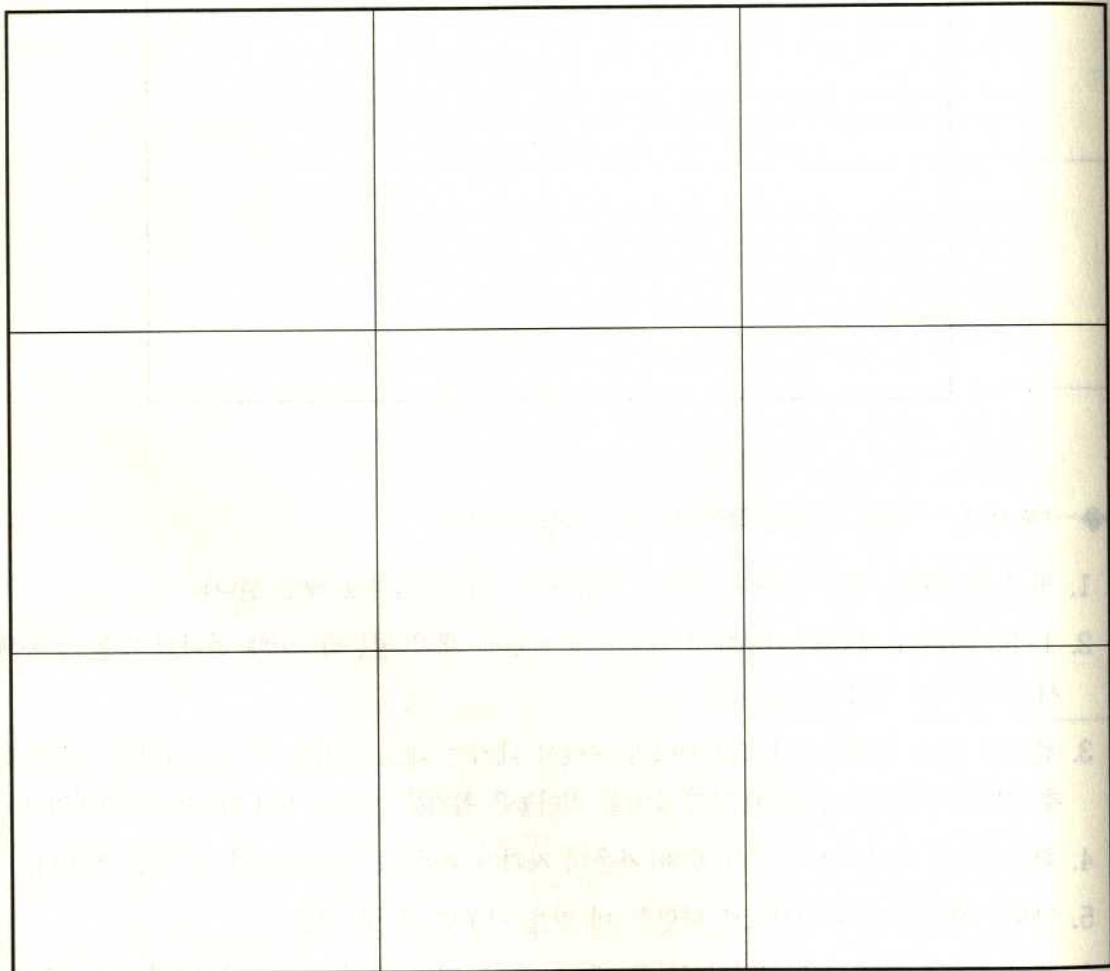
◆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적어보는 빙고게임의 규칙

1. 빙고 게임판을 나누어 준다. (4×4 게임판을 직접 그리라고 해도 된다)
2. 1~50 사이의 자연수 가운데 자유롭게 빙고판에 채워 넣는다. 이때 하나의 수를 중복해서 두 번이상 사용하면 안된다.
3. 준비가 되면 진행자가 1~50 사이의 수에서 대로 숫자를 부른다. (이때 자동번호 추출기를 이용하거나, 1~50 까지 숫자를 적어놓은 쪽지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더 재미있다.)
4. 학습자들은 진행자가 부르는 숫자 가운데 자기가 적은 숫자가 있으면 그 칸을 지운다.
5. 가로, 세로, 혹은 대각선으로 나란히 네 칸을 지우면 한 줄 빙고!
6. 게임 규칙을 정하기에 따라서 두 줄 빙고, 세 줄 빙고, 블랙 빙고(모든 칸을 다 지운다) 가 가능하다.

【활동자료 2】 인간을 특징 지울 수 있는 상징

* 인간 상징 빙고판 *

- 인간을 특징짓는 상징들을 간략한 그림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읽기자료 1】

* 기본적 인권 *

❖ 인권의 개념

오늘날 인권이라는 말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쉽게 답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쉬우면서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권을 법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의 의미는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즉,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법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법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인권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권은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인권은 반드시 있어야 할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한 최저선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다이아몬드나 고급 외제 자동차는 원하는 것이고, 살아가기 위한 적절한 주거 장소는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하는 것은 내가 바라거나 청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은 꼭 소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권은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인권은 인간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것, 일 할 수 있는 권리,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삶에 있어 기본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인권은 그렇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 인권은 보편적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계 인권 선언 초안 작성에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또 여러 나라들이 국제 인권법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인권은 장소와 문명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호소력을 가집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인권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갖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정치적 의견, 사상, 출신, 재산, 출생,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 인권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국가권력을 제한합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것이 인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권력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국가권력은 권력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권력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함부로 사용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부가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판단할 잣대가 필요합니다. 그 잣대가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보장이야말로 권리의 존재하는 목적이자 이유이기 때문에, 국민은 인권을 억압하는 권력에는 언제든지 저항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국가권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이상의 것입니다.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는 인권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국 법률이 인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권을 위반할 시에도 인권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노예제도가 행하여지는 곳에서 비록 노예들이 인권이 침해 받고 있지만 노예들은 여전히 인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권은 그렇기에 법률적이고 학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 권리들 간의 충돌과 제한

인권은 보편적인 개념이어서 서로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권리는 충돌과 대립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설 내 생활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에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충돌합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에 도움을 주는 선생님들과도 권리가 때때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각 권리를 제한하는 행동을 피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인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권리 간의 충돌을 중재하는데 전체 사회의 민주적 요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수를 고려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수를 고려함으로 약자의 권리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권리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수가 하는 것을 무조건 따르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를 표현하는 방식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권리와 권리가 다툴 때에는 어느 쪽 권리가 더 중요한지 결정 할 수 있는 판단 기준과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기관에 인권보장을 위한 시설 내 지침을 정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이 역할은 헌법과 사법부가 담당합니다. 또한 국가 인권위원회도 약자의 권리를 해석하고 지지하고 시정하는데 중요한 기구입니다.

❖ 인권의 유형

▣ 인간의 존엄

인간의 존엄은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존귀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적, 피부색, 성, 인종, 종교, 사상에 의해 차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유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행해졌던 흑인 차별은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없어졌지만, 이것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 강제로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되며 노예로 삼는 것도 금지 합니다. 고문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시민·정치적 권리

인권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권리의 유형은 시민·정치적 권리입니다. 18세기 말에 나오기 시작하여 가장 먼저 국제 법으로 인정 되었습니다. 시민적 권리는 사생활의 자유를 포함 합니다. 정보통신, 혼인 선택, 명예, 명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개인적인 사항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은 금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거주이전의 자유와 국적 취득권, 아동의 권리, 재산 소유권, 종교·사상·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치적 권리 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습니다. 이것은 알권리, 정보 접근권을 포함합니다. 집회·결사의 자

유, 참정권, 언론·출판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사람이 하나의 생명체로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의식주와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입니다. 경제적 권리로는 노동 즉, 일을 할 권리가 있으며 적정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권리로는 가족을 만들 수 있으며, 먹을 음식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기본적으로 삶을 꾸릴 적당한 곳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 몸이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권이 있습니다.

문화적 권리로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문화생활 참여, 저작권, 자기문화향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권의 질서를 추구할 권리까지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법 절차적 권리

법적 권리는 모든 인간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대우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권력자가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지배에 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법적 권리, 절차적 권리, 규범적 권리라고 합니다.

법 절차적 권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각 개인이 법적인 일에 연루되었을 때 법적인 인격체로 인정하며, 법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적법절차의 권리가 있습니다.

【활동자료 3】

* 인권은... *

- 다음 질문에 대해 <예시>와 같이 답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에 부착해 보세요.

·인권은 무엇인가? 인권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예시> 경기도 이수학교 학생들이 작성한 인권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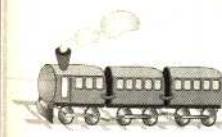
	인권은 양말이다. 왜냐하면 양말 두개가 '함께' 있어 어야 한 컬러가 되기 때문이다.		인권은 나비이다. 왜냐하면 아름답기 때문이다.
	인권은 기차이다. 왜냐하면 모든 칸이 '함께' 달려 가기 때문이다.		인권은 구두다. 왜냐하면 하나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림 1) 웹진 '인권' (2004.5.)

2 인권제대로 알기

▷ 인권영역 : 인권 전반

▷ 핵심주제 : 인권의 기본적 개념에 대한 이해하기

□ 프로그램 목표

- 인권의 개념, 역사, 사회복지와 인권의 관계 등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지식을 이해한다.

□ 프로그램 개요

모둠유무	유 (6인 1모둠)	소요시간	90분
준비물	강의자료 1), 화이트보드, 보드펜		

□ 수행방법 및 역할

프로그램내용	수행방법	진행자 역할	참여자 역할
1. 인권의 개념 및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자료 1' 을 중심으로 진행자가 자유롭게 강의한다. - 질문사항 등은 바로 답변을 하거나 나중에 모아서 하되, 중간에 초점에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자료를 사전에 숙지한다. 	
2. 사회복지와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자료 2' 를 중심으로 진행자가 자유롭게 강의한다. - 질문사항 등은 바로 답변을 하거나 나중에 모아서 하되, 중간에 초점에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진행시 유의사항

- 강의식 진행이기 때문에 참여자가 주의집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너무 어렵고 모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진행 시나리오

순서	진행 멘트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 동기 유발하기 인권이란 문자 그대로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한 정의만으로는 그 뜻이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활동식 진행보다는 강의식 교육을 통해 인권의 개념과 의미, 역사, 그리고 인권에 관한 대내외적인 규정을 살펴보고, 특히 사회복지와 인권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자 합니다. 교육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사항은 강의 중간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프로그램 소개 - 교육 목표 공유 및 동기유발 	
강의1	- <강의> 인권의 개념 및 역사	
강의2	- <강의> 사회복지와 인권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응답 및 다음 프로그램 소개 오늘은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인권에 대한 기본이해를 위해 강의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오늘의 이론적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는 인권과 친해지기 위한 활동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집중해서 들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료 1】

* 인권이란 무엇인가? *

1. 인권의 의미

오늘날 인권이라는 말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쉽게 답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쉬우면서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권을 법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의 의미는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즉,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법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법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인권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권은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인권은 반드시 있어야 할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한 최저선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다이아몬드나 고급 외제 자동차는 원하는 것이고, 살아가기 위한 적절한 주거 장소는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하는 것은 내가 바라거나 청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은 꼭 소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권은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인권은 인간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것, 일 할 수 있는 권리,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삶에 있어 기본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인권은 그렇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 인권은 보편적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계 인권 선언 초안 작성에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또 여러 나라들이 국제 인권법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인권은 장소와 문명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호소력을 가집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인권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갖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종, 피부색, 성, 언

어, 정치적 의견, 사상, 출신, 재산, 출생,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인권은 국가의 권력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하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것이 인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권력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국가권력은 권력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권력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함부로 사용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부가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판단할 잣대가 필요합니다. 그 잣대가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보장이야말로 권리의 존재하는 목적이자 이유이기 때문에, 국민은 인권을 억압하는 권력에는 언제든지 저항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국가권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이상의 것입니다.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는 인권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국 법률이 인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권을 위반할 시에도 인권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노예제도가 행하여지는 곳에서 비록 노예들이 인권이 침해 받고 있지만 노예들은 여전히 인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권은 그렇기에 법률적이고 학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 권리들 간의 충돌과 제한

인권은 보편적인 개념이어서 서로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권리는 충돌과 대립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설 내 생활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에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충돌합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에 도움을 주는 선생님들과도 권리가 때때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각 권리를 제한하는 행동을 피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인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권리 간의 충돌을 중재하는데 전체 사회의 민주적 요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수를 고려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수를 고려함으로 약자의 권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권리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수가 하는 것을 무조건 따르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를 표현하는 방식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권리와 권리가 다툴 때에는 어느 쪽 권리가 더 중요한지 결정 할 수 있는 판단 기준과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기관에 인권보장을 위한 시설 내 지침을 정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이 역할은 헌법과 사법부가 담당합니다. 또한 국가 인권위원회도 약자의 권리를 해석하고 지지하고 시정하는데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 원칙도 중요하지만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의 권리만을 늘 강요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권은 권리인 동시에 책임이 늘 수반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인권의 유형

인권을 영어로 쓸 때 복수인 'human rights'로 씁니다. 이것은 인권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의미입니다. 시대에 따라 인권은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이메일을 열어보는 것이 통신 자유의 침해이지만, 과거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는 이런 문제 자체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인권이 있는지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권 사상과 국제 인권법의 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인권을 큰 테두리 내에서 분류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제적 인권 기준(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에 맞추어 제시하였습니다.

① 인간의 존엄

인간의 존엄은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존귀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적, 피부색, 성, 인종, 종교, 사상에 의해 차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유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행해졌던 혹인 차별은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없어졌지만, 이것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 강제로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되며 노예로 삼

는 것도 금지 합니다. 고문도 금지하게 되어있습니다.

② 시민·정치적 권리

인권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권리의 유형은 시민·정치적 권리입니다. 18세기 말에 나오기 시작하여 가장 먼저 국제 법으로 인정 되었습니다. 시민적 권리는 사생활의 자유를 포함 합니다. 정보통신, 혼인 선택, 명예, 명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개인적인 사항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은 금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거주이전의 자유와 국적 취득권, 아동의 권리, 재산 소유권, 종교·사상·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치적 권리 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습니다. 이것은 알권리, 정보접근권을 포함합니다.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언론·출판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③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사람이 하나의 생명체로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의식주와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입니다. 경제적 권리로는 노동 즉, 일을 할 권리가 있으며 적정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권리로는 가족을 만들 수 있으며, 먹을 음식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기본적으로 삶을 꾸릴 적당한 곳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 몸이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권이 있습니다.

문화적 권리로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문화생활 참여, 저작권, 자기문화향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권의 질서를 추구할 권리까지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④ 법 절차적 권리

법적 권리는 모든 인간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권력자가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지배에 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법적 권리, 절차적 권리, 규범적 권리라고 합니다.

법 절차적 권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각 개인이 법적인 일에 연루되었을 때 법적인 인격체로 인정하며, 법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적법절차의 권리가 있습니다.

3. 인권보장을 위한 국내 외 규정들

인권보장을 위한 국내 외 규정들을 살펴봄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영역이 보장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권에 대해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평등을 보장하는 국제적인 기본 규칙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은 모든 인류를 위한 기본 규칙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련의 윤리적 규정입니다. 이 윤리적 규정의 힘과 영향력 그리고 적용 가능성은 많은 국가들이 국내법에 수용함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1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인권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함으로서 평등의 가치와 차별금지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 1966년)

국제인권조약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며 강제력이 높은 국제적 조약 형태로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규약을 채택하고 여기에 실행될 힘을 싣는 데 18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규약들은 다음과 같이 매우 중요한 세 가지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결정권으로 인하여 식민지들이 독립되었으며, 새로운 많은 국가들이 유엔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 원리 그리고 성별·인종·종교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불가분성의 원리로 시민적·정치적 자유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기준 간의 필수 불가결한 상호 의존이 그것입니다.

먼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76)에서는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조약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76)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나라에서 여건을 조성해야 하고 감시하는 것 까지도 포함합니다. 국제인권조약에 동의서를 제출한 나라들은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 위원회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1에서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인권을 결국 국내법에 의한 법적 권리로서의 성질 뿐 아니라 자연권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폭넓게 수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법에서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가족형태나 가족상황,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경력,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에서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성희롱 등을 금지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 4).

△ 장애인 권리 협약(2006)

「장애인권리협약」은 UN이 8번째로 채택한 인권협약으로 4년에 걸친 논의 끝에 2006년 9월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금번의 「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보장하고, 모든 인권 향유를 명백히 하고, 보호하고 장려하며, 장애인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장려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제1조 목적).

이 협약은 기존의 국제규정에 비해 근본적이며 중요한 기본적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a)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 고유의 존엄성, 개인적 자율성의 존중과 개인의 독립성, (b)차별금지, (c)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사회통합, (d)인류 다양성과 인간성의 부분으로서 장애의 다양성 수용에 대한 존중, (e)기회균등, (f)접근성, (g)양성평등, (h)장애인아동 역량 개발을 위한 존중과 장애아동의 정체성 보호를 위한 권리존중의 제반 원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료 2】

* 사회복지와 인권 *

인간은 누구나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물론 때때로 혼자일 때도 있지만 많은 시간을 함께 더불어 보냅니다. 지금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시설에 오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 오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함께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삶을 꾸리기에 적절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의 인권이 중요하듯이 지금 사는 시설에서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교육내용

1. 장애인 생활시설이란
2. 인권과 사회복지
3. 외국의 인권관련규정 벤치마킹

1. 장애인 생활시설이란

1) 장애인 생활시설의 개념

우리나라 장애인생활시설의 전국적 분포는 265개 시설(보건복지부, 2005)에 이르고 있으며, 미신고 시설의 경우도 300여개가 조건부 신고시설로 전환(국가인권위원회, 2005)되는 등 장애인생활시설은 다양한 주거형태 중 하나로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시설은 199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 48조에 의해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이 중,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4-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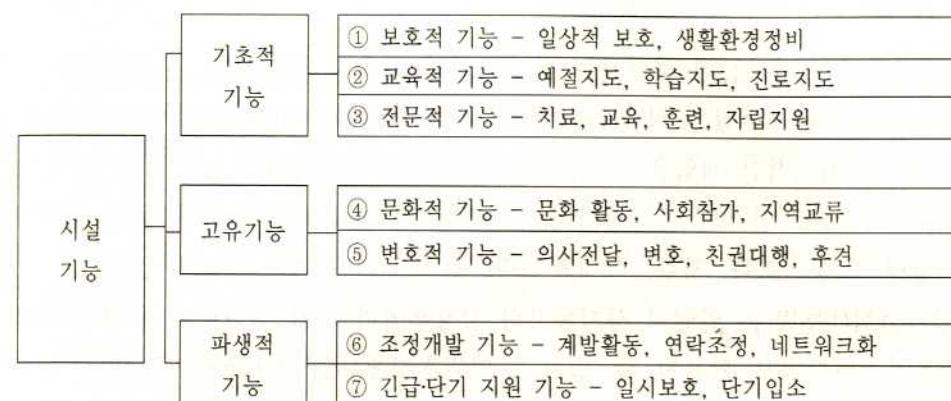
[표 4-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제 48조)의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유형 및 기능

시설구분	법적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 48조)	시설의 종류 및 기능 (시행규칙 제 32조 관련)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p>가.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 <p>나.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 <p>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p>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 <p>나.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 <p>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내 소규모 시설</p>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장애인생활시설로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그러나 우리나라 생활시설은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요양시설, 영유아시설은 생활시설 체계 속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주단기보호시설은 지역사회 이용시설 체계 속의 시설로 구분될 뿐 법적으로는 모든 시설이 주거서비스와 전문적 재활서비스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고유무, 생활인 규모, 장애정도에 따른 인력배치 및 시설설비 기준만 다를 뿐 생활시설 유형 간의 기능과 역할의 구분은 매우 모호한 실정이다(임성만, 2006).

2) 장애인 생활시설의 기능 및 현황

일반적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은 가정에서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 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집단 보호와 치료를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며 그 기능은 [그림 4-1]과 같이 구분된다.



[그림4-1] 생활시설의 기능

첫째, **기초적인 기능**이다. 이는 생명보존 활동에 필요한 의식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일상적 보호와 이에 필요한 생활환경보호를 수행하는 보호적 기능을 의미한다. 또 각 발달과정에 맞추어 교육하는 교육적 기능, 각자가 도달해야 할 생활 과정을 설정하여 이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 처우 기능이 있다.

둘째, **고유기능**이다. 이는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체적이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착 되어야 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즉,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의 문화생활, 사회참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한 문화적 생활 기반의 확충 뿐 아니라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과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사회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또 시설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도 포함된다.

셋째는 **파생적 기능**이다. 이는 기초적 기능과 고유기능이 상호 관계를 가지면서 앞으로 시설이 확충, 강화해 나가야 하는 기능이다. 여러 사회자원의 개발과 연락조정, 네트워킹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조정·개발 기능과 긴급한 상황에 처한 요 보호자에게 일시보호나 단기보호를 제공하여 응급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단기지원 기능을 말한다.

2. 인권과 사회복지

1)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

(1) 개념과 원칙에서 본 인권과 사회복지

인권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인간 고유의 권리이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상태를 이루기 위해 개인에서부터 거시 사회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에 전문적·제도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자 사회복지의 출발점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며, 사회복지가 개입하는 다양한 문제 역시 빈곤, 차별, 가족, 질병, 노동, 교육, 자유, 학대와 폭력 등 인권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

국제사회사업가협회(IFSW)는 인권이 사회복지의 심장부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문가와 사회복지대학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인권훈련메뉴얼’(Human Rights Training Manual)을 1992년에(1994년 2판) 제작하였다. 이 메뉴얼에는 인권과 사회복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IFSW Manual, 2002).

- 사회복지는 인도주의와 민주적 이상에서 태생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은 그 시작에서부터 인간욕구의 충족과 인간의 잠재력 및 자원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왔다.
- 사회복지는 변화에 관한 것이다 : 개인, 가족 및 집단생활, 정책과 서비스, 법률과 사회태도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 사회복지는 단순히 개인을 직접적으로 돋는 일만은 아니다. 사회복지는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집단과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와 활동들에도 개입한다.
-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지리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화와 맥락 속에서 일한다.

한편, 인권의 원칙은 사회복지의 개념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Hare, 2004). 인권은 사회복지의 이론, 가치, 윤리 그리고 실천과 분리될 수 없으며, 인간의 욕구에 반응하는 인권은 반드시 옹호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인권은 사회복지실천 활동의 정당성을 구현하고 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이혜원 역, 2005 : 35~36).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원칙으로 잘 알려져 있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수용, 비심판적 태도, 비밀보장 등의 내용에는 이미 인권의 원칙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 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을 보면, “사회복지사는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에 민감하여 차별과 억압, 빈곤과 다른 형태의 정의롭지 못한 부분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

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사회복지전문직은 서비스와 사회통합, 능력개발, 사회정의,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핵심적 가치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Reichert, 2003:79). 더 나아가 국제사회사업가협회(IFSW)의 “International Policy on Human Rights”에서는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인권 실현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수해야 할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들을 제시하였다.

- 모든 사람들은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도덕적 배려로 정당화된다.
- 모든 개개인은 자립(self-fulfillment)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동등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화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개개인은 사회의 안녕에 기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 어떠한 형태의 사회이던지 모든 사회는 그 구성원에게 최대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의 원칙에 대한 소신을 가져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개인과 집단, 지역사회와 사회에 대해 그들이 발전할 수 있고 개인-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훈련된 지식과 기술에 헌신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 사회복지사는 성, 연령, 장애, 인종, 사회계층, 종교, 언어, 정치적 신념, 성적 취향에 기초한 어떠한 차별 없이 가장 최선의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는 인권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다(국제사회사업가협회 IFSW, 1988). 이에 국제사회사업가협회와 국제사회사업대학협의회는 사회복지교육과 사회복지실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며, 기본적인 사회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확실하고도 충분하게 관여하는 것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지식은 사회복지전문직이 원조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인권에 관하여 보다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이해할수록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전문적인 활동과 개입이 더욱 증진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이혜원 역, 2005 : 20, Reichert, 2003:4). 또한 인권을 전문직에 통합함으로서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수행에서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고유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Reichert, 2003:4) 결론적으로 인권의 보장은 사회복지실천과정을 통해 보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인권의 원칙 및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실천기술들이 접목될 때 인권이 보다 잘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Ife, 2000).

(2) 인권의 사회복지에 대한 영향

본 장에서는 인권과 사회복지가 역사적, 정책적으로 어떠한 관계성을 갖고 있으며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첫째, 인권 3세대 개념에 입각한 인권의 발전과 사회복지의

영역 변화, 둘째, 국제적 인권규정이 자국내 사회복지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거시적인 수준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인권의 발달이 시민적 권리에서 경제·사회적 권리, 연대의 권리로 인권 3세대에 걸쳐 발전되어 오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의 강조점도 [표 2-2]와 같이 변화되어 왔다(Ife, 2000). 1세대 인권이 자유주의에 기반한 자유권과 정치권의 발전을 이루어 온 과정 동안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사회취약계층 및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옹호와 대변, 교도소나 정신장애인 수용 시설에서의 인권 보장, 난민 보호소와 난민노동의 인권문제를 다루었다.

2세대 인권은 사회민주주의에 기반하여 경제권과 사회권의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권, 주택권, 건강권, 직업권, 사회보장권 등 제도적인 사회복지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되어왔다. 또한 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는 공공과 민간에 의한 직접적 서비스 제공과정이 인권보장의 한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3세대 인권은 최근에 발전되고 있는 연대를 통한 환경권이 중요한 인권영역으로 강조되면서 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는 지역사회개발의 측면이 발전되고 있다.

[표 2-2] 인권의 발전과 사회복지실천

	첫 번째 발전	두 번째 발전	세 번째 발전
명칭	시민적·정치적인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연대적인 권리
기원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학; 발전 학문 (development studies); 환경 보존의 이데올로기
실례(예)	투표권, 자유롭게 말 할 수 있는 권리, 정당한 판결을 받을 권리: 고문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법의 보호: 차별로부터의 자유	교육권, 주택권, 건강권, 직업권, 적절한 소득권, 사회보장권, etc	경제적인 성장과 번창의 권리; 경제성장으로부터의 이익; 사회적 조화; 건강한 환경, 깨끗한 공기, etc
기관 (agency)	법률 상담소: 국제사면위원회: 인권 감시 단체: 난민 노동 (refugee work)	복지 정권, 제 3섹터, 민간 시장 복지 (private market welfare)	경제발전기관; 지역 프로젝트; 그린피스
주요한 것 (dominant)	법률	사회복지	지역발전
전문적인 사회복지	옹호: 난민 노동: 난민 보호소 (asylum seekers): 교도소 개혁	직접적인 서비스: 복지정책의 관리: 정책발전과 옹호: 조사	지역발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개인적, 영적인

한편, 관습법 전통이 강한 영국의 경우 1998년도에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을 직접적으로 강화한 「인권법」을 제정하였다. 영국은 인권법의 제정으로 관련된 개별 법률들을 개정해야 했고, 사법적 판례 또한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인권법은 무엇보다 사회복지정책 결정자나 관리자 및 실천가들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권법 제8조인 사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에 있어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의 결혼과 입양을 비롯한 가족구성의 권리가 인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실천 영역의 주요한 부분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영국에서의 인권법 주요 조항이 사회복지실천에 영향을 미친 내용은 다음과 같다(William, 2001:389).

[표 2-3] 1998년 영국 인권법 제정이 사회복지실천에 미친 영향

조항	보호받을 권리	설명
2	생명권	·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방법을 취해야 할 의무를 포함 - 의료적 치료와 취약한 어른/아동학대 문제 처리에 대한 접근성 등
3	비인도적·비하적인 처우 및 처벌 금지	· 신체적 처벌 및 교도소 상황, 심문기법 포함
5	자유권과 안전권	· 자유는 법률규정에 의한 절차의 범위에서만 박탈할 수 있음.
8	사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	· 인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된 것으로, 이에는 성(sex)과 성적취향 (sexual orientation) 및 이들의 비밀정보와 부모됨의 권리까지 포함.
9	생각·양심·종교의 자유	· 주일(holy days)을 존중해 줄 요구, 종교를 바꿀 자유 포함.
12	결혼과 가족을 찾을 권리	· 이 조항은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y)를 갖고 있는 사람의 권리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1조 1항	사유재산 및 소유의 평화로운 향유권	· 복지급여와 다른 유형의 급여가 재산소유의 구성요소가 됨.

미국의 경우 사회복지의 대표기관인 NASW에서는 모든 사회복지이론과 응용지식이 기반으로 두어야 할 원리로서 「인권」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NASW의 정책강령으로서 발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NASW, 2000:181-182).

- 사회복지사는 세계인권선언뿐 아니라 UN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협약' 및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제거 협약', '아동권리협약' 등에 대해 정부의 비준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아동의 권리 및 아동노동, 아동매춘과 같은 아동착취와 관련한 인권 침해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며,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공공과 전문직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옹호해야 하며, 한 사람의 권리를 죽음의 위험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정책과 실천, 편견적 태도, 증오, 인내심 없는 행동들에 대해 비판해야 한다.
- 자격기준이 없거나 적절하지 못하게 이행되고 있을 때, 사회복지사는 정부 및 비영리조직들, 기타 지역사회와 여타 집단과 함께 협력하여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강화시키도록 주도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경제적 권리와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 인간개발과 인권의 발전을 위해 UN과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 개인이나 가족, 집단, 지역사회, 국내기관 또는 정부 등 사회복지실천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복지사는 인권에 기반하여 일해야 한다.
- 인권을 대표하여 옹호하는 사회복지사는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NASW는 위협을 받는 사회복지사가 충분한 전문적 지원을 제공받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실천으로서의 인권기반접근(right-based approach)

그동안 욕구기반(need-based)모델, 사회정의(social justice based)모델, 시민권기반(civil right) 모델들은 사회복지실천의 중요한 추진력이었다. 인권기반(right based) 접근법은 기존의 모델들을 폐기하거나 배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존 모델들을 확장하고 맥락화 할 수 있다(Skegg, 2005:669). 또 인권적 시각을 사회복지실천에 접목하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실천의 정당성에 강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Ife, 2001:1).

인권기반 실천은 풀뿌리 단위의 사람들에게 정부나 자선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자선으로서의 애매모호한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안전과 존엄, 경제적 기회 권리로 제시하기 때문이다(Robson, 1997).

보다 구체적으로 인권 관점이 사회복지실천에 주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Skegg, 2000:671).

첫째, 인권에 대한 논의는 국내와 국제적 영역 모두에서 그 중요성을 갖고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인권적 시각은 사회복지에 내재된 욕구기반모델의 약점 즉, 가부장적이며 자선적 시각과, 사회정의기반 모델의 약점 즉, 강제적 재분배의 암시 등에 대한 비판을 보완한다.

셋째, 인권적 접근은 자선(charity)보다는 자격(entitlement)을 강조하며 사회복지대상자의 권한을 증진시킨다(empowering).

또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려운 윤리적 딜레마 상

황에서 도덕적 합리화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시해 준다(Ife, 2000).

그러나 인간기반 접근법이 완전한 사회복지실천 기법으로서 이론적 공고화나 경험적 토대가 완전히 구축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인권기반 접근법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인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존중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원칙적 및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실천에서의 인권기반 접근은 장애인들이 비록 자격에서 거부되는 일이 있더라도 다른 시민들과 같이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장애인의 필요와 욕구는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다. 장애인 역시 기본적 욕구(음식, 깨끗한 물, 거주지, 건강보호, 교육, 수입)와 심리사회적 욕구(친구, 다양한 관계,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 지역사회 통합 등), 정치적 욕구(조직화, 자유로운 연대, 법률적 권리, 투표권)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 역시 의사소통과 이동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Harris, 2003:2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인권기반 접근법이 가정하고 있는 이념적 가치관, 사회복지영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새로운 문제인식,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인권원칙 등의 측면에서 이해를 돋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인권기반 접근법을 제시하고 집대성한 Jim Ife(2000), Elisabeth Reichert(2003) 등의 저술을 근거하여 정리하였다.

(1) 인권기반접근법의 기본적 전제

인권기반접근은 이념적 가치관 및 사회복지실천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Ife, 2000:140-165).

첫째, 인권기반접근은 포스트모더니즘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현대사회를 혼동되고 무질서하며 비합리적인 구조로 보고 있다. 이러한 세계관은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예측 가능한 세계를 가정하고 있는 모더니즘적 세계관을 허구로 간주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이 서비스계획이나 전략수립 등을 통해 일정형태의 질서와 예측가능성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을 통제와 질서를 강요하는 고전적인 계몽주의나 가부장적 모더니즘 해결방식으로 비판하고 있다.

둘째, 인권기반접근법은 일종의 집합주의로서의 이데올로기적 함의와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사회복지실천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시민권'으로 이에는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대상자 모두 하나의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바탕으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권력과 통제의 대상으로서 클라이언트나 슈퍼비전과 같은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용어사용에 대한 심도있는 사용변경에 대해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개인에 의한 개별적 접근보다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개입을 더 중요시 하며, 사회복지실천 전 과정을 통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이용자의 끊임없는 대화와 참여를 강조한다.

셋째, 인권기반접근법은 사회복지실천의 결과보다는 과정중심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에는 사회복지실천을 통해 인권을 실천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실천과정 자체에서 인권원칙이 지켜지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하며, 이 원칙은 사회복지대상자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사가 상호 작용하는 모든 사람 즉 동료, 경영자, 지역사회구성원, 학생, 기타 전문가들에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과정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인권기반접근법은 사회복지대상자의 최대한의 자기결정과 스스로의 통제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게 하거나, 면접과 서비스 계획, 프로그램 참여 등 모든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사회복지대상자의 참여를 중요시하고 있다. 한편, 보다 이해하기 용이한 인권과 사회복지전문직 사이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주요 사회복지 개입방법으로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 강점관점(Strengths Perspective), 인종·민족 민감성 실천, 여성주의 실천, 문화적 능력 등이 있다(Reichert, 2003:228)..

(2) 인권기반접근법에 근거한 사회복지 용어사용 재검토

인권기반접근법의 위와 같은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기본전제를 통해 볼 때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사회복지 용어상의 제 문제가 비판되어질 수 있다. 인권기반접근법에서 용어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어떠한 용어가 사용되어지는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맥락과 필요성 자체에 대한 비판이기 보다는 ‘용어’ 자체가 원래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담긴 세계관이 인권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의식적으로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략, 표적집단, 철회, 계약, 이탈, 동맹 등과 같은 용어는 오히려 군대식 표현으로 이는 폭력적이기까지 하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가 인권전문으로서의 사회복지 영역에 적용되어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① 클라이언트라는 명칭

원래 클라이언트라는 의미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전문가의 서비스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클라이언트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나 정도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를 선택하거나 서비스의 종류, 급여의 한도 등에 대해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 즉 원래 클라이언트라는 용어와 실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의 사용되는 맥락에는 상당한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인권기반접근법에서 클라이언트라는 명칭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첫째, 클라이언트는 의존적이거나 상대적으로 권력이 없는 위치를 의미하고 있으며, 둘째,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는 지혜와 전문지식이 하향식으로 가는 접근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전문가의 상대적인 우월적 지식과 기술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대상자의 지혜와 가치를 소홀히 하여 인권에 대항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적 시각에서 사회복지실천의 목표가 시민권의 보장이라면 클라이언트라는 용어 보다는 ‘이용자(user)’, ‘시민’ 등의 용어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② 개입

개입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이후 체계이론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그 대중성을 확보하면서 널리 사용되어온 것으로 개인, 가족, 기관, 지역사회 등을 모두 체계로 분석하고 사회복지사는 이 체계들의 변화를 위해 개입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인권기반접근법에서는 ‘개입’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 이유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회복지사가 개입이 일어나야 하는 체계 밖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며 둘째, 모든 행동이 개입을 하는 사람인 사회복지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다. 인권기반접근법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대상자를 ‘행동과정의 동행자’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체계 내부에서 사회복지사가 자신과 일하는 사람과 일치해서 함께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③ 수퍼비전

수퍼비전 역시 사회복지에서는 전문성 개발과 유능한 실천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인권기반접근법에서는 수퍼비전을 받음으로 인해 수퍼바이저가 성장하는 것을 의미해야 하며, 여기에 감시와 통제의 의미는 없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퍼바이저라는 용어는 보다 높은 권력을 가진 위치에서 모든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수퍼바이저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며, 그에게 모든 업무에 대한 방법을 말해주는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러한 통제와 감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수퍼비전 용어에 대해 다른 용어로 대체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3) 인권기반 접근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실천과정

인권기반접근법이 사회복지실천과정과 실천기술들에 대해 모든 구체적인 방법과 기술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면접, 집단, 지역사회, 계획, 기관 운영, 수퍼비전 영역에서 인권 원칙을 반영한 접근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 면접

면접은 사회복지 업무 중 일부분에 해당하나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통상 면접은 사회복지사가 통제력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으로 만약 사회복지사가 통제력을 상실하면 사회복지사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사회복지이용자가 통제력을 잃는다면 그 자체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긴다.

이에 대해 인권기반접근법은 일반적으로 불평등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면접에 대해 비판한다. 인권기반접근법은 면접의 주인공은 사회복지이용자이므로 사회복지이용자의 욕구와 그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면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사회복지사가 단지 관련 사람과 함께 이야기 한다 또는 대화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사회복지 이용자 중심의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집단

사회복지에서의 집단활동 즉 그룹 혹은 사회복지사가 지도자 역할을 하고 사회복지 이용자 혹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팀 회합, 행동집단, 사례협의회 등 여러 종류의 집단 속에서 일한다. 인권관점에서 보면 집단이라 함은 사회복지사가 그 집단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 개개인이 집단을 통제하며 자유에 대한 권리, 자기결정권 등을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타인에 대한 존중, 모든 구성원에게 말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실천원칙을 이행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③ 지역사회복지

인권기반접근법에 의하면 지역사회복지 내지 지역사회 과정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는 실천이다. 지역사회복지에는 비폭력적 방법, 합의적 의사결정, 능력상승을 다루게 된다. 인권관점에서 지역사회 지도자는 한사람에 의해 모든 결정이 내려지고 명령으로 하달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문과 합의 후 민주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집단 전체에 의해 내려지고 소유되는 것이다.

④ 계획

인권기반접근 관점에서는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계획’을 매우 비판적으로 본다. 사회복지사들이 전략적 계획, 실행계획, 사업계획, 목적설정과 목표의 구체화, 사정활동 등 수많은 시간을 계획을 세우는데 소비하고 있다고 보고, 이는 비합리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현실에서 완벽한 계획 수립에 집착하는 것은 허구이며 시간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계획에 집착하는 것은 그것이 변화의 힘이 있는 인권의 가능성을 없애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획의 경우 대부분 외부의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에 요구되는 것으로 이에 지나지게 매몰되면, 정작 사회복지 이용자나 지역사회와 만나 사전에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즉 서비스가 이용자의 욕구와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즉 미리 계획된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전달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계획에 있어서도 계획의 ‘과정’에서 사회복지 이용자 혹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자기결정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⑤ 경영과 수퍼비전

기관의 경영 측면에서 볼 때 경영자는 좀 더 우월한 지위에 있게 하고 강제적 실천과 인권을 부정할 잠재력이 있는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함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기반관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경영은 경영 내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강화하는 식의 실천이 되어야 하며, 경영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인권의 목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경영과정에의 참여적이고 대화적인 구조와 절차를 갖추고 다양한 참여기회를 만들며 불평등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경영자의 조직내 모든 고용인들의 인권을 지향하는 경영을 강조한다.

수퍼비전 역시 이 용어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수퍼비전을 통해 얻을 있는 중요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인권을 지지하고 대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인권기반접근에서는 첫째, 전통적으로 개별적 방식에 의한 수퍼비전을 집단을 통해 상호작용을 허용하고 더 많은 시각이 표현되며 더 많은 지혜가 공유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둘째, 사회복지사가 수퍼바이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여 개인적으로 어울리는 이념적 입장, 연령, 성 등 외부적 요인들이 수퍼비전의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이러한 과정에서 수퍼바이저가 적어도 동등한 통제력을 갖고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하며 수퍼바이저 또한 배움의 자세로 대화의 차원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한다.

3) 인권기반접근으로서의 이용자 참여모델¹⁰⁾

여기에서는 인권기반접근의 하나로서, 이용자참여 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인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인권보장을 도모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개념

참여의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결정적인 요소로 등장하였으며, 따라서 서비스를 계획하거나 전달하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의 영향력을 인정해야 한다(Braye, 2000). 영국에서 발간된 사회복지 용어 사전에서는 서비스 이용자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Pierson & Thomas, 2002 : 485).

이용자는 단어는 사회복지나 사회적보호서비스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일하는 다양한 집단에 대한 일반적 호칭으로 ‘서비스 이용자(service user)’ 또는 ‘이용자(user)’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인 1990년대에 들어서이다. 그 전까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 가장 흔히 사용되었던 용어는 ‘클라이언트’였는데, 1990년대 이후로 ‘이용자’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이 용어는 점차 실천가, 관리자, 교육자들에게 폭넓게 파급되고 있다. 이는 이 용어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와 영향력을 강조하는 최근의 추세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0) 이용자 참여모델은 김미옥·김용득(2006)이 제 14회 RI Korea 재활대회에서 주제 발표한 ‘이용자 참여의 이론과 전망’의 원고 일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논문을 참고하라.

(2) 이용자 참여의 영역과 지원요소

이용자 참여를 위한 기본 전제는 전문가와 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용자 참여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개별적인 참여이며, 둘째는 서비스 이용자 집단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개인들의 참여이다. 이러한 이용자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가 교육과 직원 훈련이 중요하며, 동시에 조사연구에서 이용자 참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도식화하면 [표 2-4]와 같다.

① 이용자 참여를 위한 기본전제

일반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라는 용어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일정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리고 ‘이용자 참여’는 그들이 어떤 서비스를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그리고 가족, 친구, 이웃 등은 그들 스스로가 서비스 제공자이면서 동시에 서비스 이용자이다. 따라서 이들도 이용자 참여의 주체에 포함될 수 있다. 이용자 참여의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전문가와 이용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의 개선이다.

② 이용자 참여의 영역

이용자 참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Lindow & Morris, 1995). 첫 번째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개별적 참여이다. 두 번째는 서비스 이용자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개인들의 참여이다. 역사적으로 개인 차원에서의 참여보다는 서비스 이용자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 차원의 참여가 더 큰 주목을 받아왔다.

가. 개별적 참여

이용자 참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용자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이용자의 개별적 참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실무자의 가정이나 행동에 대한 점검이 요청되며, 서비스 조직화 방식에 대한 고려,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나. 집단적 참여

이용자 참여를 정책으로 실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용자 참여의 초기실행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패턴의 어려움이 발견된다. 첫째, 기존의 네트워크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강화할 것인가의 이슈 둘째,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공자, 자원봉사자의 혼합체

계로 구성된 의사소통 및 계획을 위해 전반적으로 새로운 틀 구성을 시도해야 하는 이슈 세째, 이용자와 보호제공자에 대한 자원봉사위원회를 통하여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제공자의 직접적 투입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슈 네째,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제공자가 함께 계획을 확립해야 하는 이슈 등이 그것이다(Means & Lart, 1994:232). 또한 사회복지의 전통적인 가정과 실천들은 이용자의 집단적 참여에 많은 장벽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와 활성화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용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이용자 주도 서비스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가 주도하는 조직(user-controlled organization)으로의 전환과 이용자 주도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용자 주도 서비스는 기관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은 비교적 공통적이다(Morris, 1994).

- 이용자참여조직들은 종종 급진적 변화에 대한 바램과 저항의 결과로 나타난다.
- 이용자주도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서로 일체감과 동일시의 감정을 갖고, 이것을 통해 강점을 얻는다. 그들이 누군가를 고용할 때, 서비스를 계획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선발한다.
- 이용자 주도 서비스(user-controlled service)는 장애에 대한 의료모델과 정신건강에 대한 생-의료모델에 저항하는 장애와 생존자 운동과 관련이 있다. 이는 사회적 모델 대신에 제공될 서비스의 본질과 접근 모두를 결정해준다.
- 이용자 주도 서비스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욕구들을 반영한다. 서비스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확인으로부터 도출되며, 융통성 있고, 이용자 욕구에 반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용자 주도서비스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선택과 통제력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 이용자 주도서비스는 어떠한 서비스가 전달되는지에 관한 결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참여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 이용자 주도서비스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는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질 것을 주장한다.

③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요소

가. 전문가 교육과 직원개발

이용참여 서비스와 조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교육과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학교교육에서도 반영되어, 기술 습득에 치우친 교육이 아니라 보다 기본적인 사회복지사의 태도, 가치, 철학, 윤리 등의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원개발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변화에 대한 저항을 다루는 것이다. 변화에 대한 저항의 다른 형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부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자들에게 임파워먼트 접근을 통해 진정한 동기가 부여된다면 이 저항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나. 이용자 참여에 대한 조사 연구

이용자 참여에 관한 연구들에서 제기되는 이슈들 중 하나는 조사연구에서 이용자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와 관련된 이슈이다. 이는 이용자가 제외된 채 비장애인 연구자에 의해 아젠다가 형성되고 연구가 수행되고, 장애인을 포함하지 않은 채 정책 형성 논쟁에 빠지는 일련의 조사연구과정에 대한 비판이다(Morris, 1992, Oliver, 1992). 장애연구에서 참여적 및 해방적 접근은 이러한 전통적인 실증주의적, 구성주의적 연구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제기되었다. 참여적 접근(Participatory Approach)은 장애인을 연구에 포함시키는 의미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참여적 방법이 여전히 장애인이 연구의 주체라기 보다는 객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사회적 모델의 강조와 함께 해방적 접근(Emancipatory Approach)이 논의되고 있다. 해방적 접근은 연구생산에 있어서의 사회적, 물질적 관계를 바꿈으로써 전체 연구과정을 장애인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수행방법을 말한다(Oliver, 1992; Zarb, 1992). 따라서 조사 연구에 있어서도 이용자의 참여를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와 관련된 열린 논의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연구의 참여적 및 해방적 접근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2-4] 이용자 참여의 영역과 지원요소

대분류 기본 전제	중분류	소분류	
		전문가와 서비스 이용자의 불평등한 관계 개선	
참 여 영 역	서비스 실무자의 가정이나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에 대한 지원이 아닌 손상 강조 · 문화적 둔감성 · 이용자의 선택에 대한 전문가의 이견 · 실무자들의 이용자 권리에 대한 오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 가정들 ·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선택능력 부재) 가정 · 실무자와의 제한된 의사소통
	서비스 조직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과 복지의 분리/공공, 민간, 자원의 분리 · 서비스 이용자 구분 방식 · 조직의 관행-오래된 서비스 제공 방식 · 제공 가능한 도움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구조 · 실무자에 대한 외부압력 · 선택시 필요한 정보의 부족 ·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없다고 느낌 · 지역사회 편견
	선택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적 서비스-선택가능성 배제 · 선택을 방해하는 빙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시 필요한 정보의 부족 ·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고 느낌 · 대표성과 책임성
집 단 적 참 여	참여 방해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하는 서비스별로 집단을 구분하기 · 능력에 대한 인식과 의사소통 · 주변화된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이용자들보다는 보호자들과 의논하기 · 문화와 언어 · 의제를 제기하는 자 · 대표성과 책임성
	참여 활성화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 ·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와 임파워먼트를 위한 자원들 · 케어워커들의 경험
	포괄적 참여 이용자 주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및 평가, 기관 운영 등 포괄적 참여 · 이용자 통제 조직에 의한 이용자 주도 서비스 전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본 전제	전문가와 서비스 이용자의 불평등한 관계 개선	
지 원 요 소	전문적 교육과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업압적, 반차별적 교육 강조 · 기술습득만이 아닌 기본 교육 강화
	직원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임파워먼트
	조사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와 함께 아젠다 형성/ 연구/ 정책 논의

* 자료 : Service user involvement: synthesis of findings and experience in the field of community care. Lindow, V & Morris, J. 1995. A report for the Joseph Rowntree Foundation. 필자가 재구성하여 작성.

【교육자료 3】¹¹⁾**3. 외국의 인권관련규정 벤치마킹 : 영국, 일본, 미국**

이 장에서는 영국의 시설보호 실천강령, 일본의 八王子 평화의 집의 인권규정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에서 제시하는 생활시설 이용자의 권리와 분석하여 우리나라 생활시설 장애인의 인권관련 규정 및 인권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영국의 [시설보호 실천강령]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시설보호를 받는 입소자들을 위해 필요한 인권보장의 내용을 권장하는 것으로 1997년도에 3차 개정된 것이다. 한편, 일본 八王子 평화의 집은 1991년 8월에 개관하였으며, 50명의 지적장애인 생활하고 있는 입소시설이다. [직원을 위한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은 八王子 평화의 집 개설 이래 5년 동안에 걸쳐 만든 것이다. 이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에는 八王子 평화의 집이라고 해서 항상 입주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음을 밝히면서, 그러나 인권 침해에 대한 논의에 따라 입주자의 인권을 지키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기관내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에서 제시하는 생활시설(nursing home) [이용자의 권리]는 시설 입소시 이용자에게 제시하는 권리에 대한 안내서를 번역한 것이다. 영국이나 일본의 윤리강령과 다소 성격이 다른 미국의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서를 제시한 것은 우리나라 역시 입소할 때, 이용자에게 인권관련 주요 권리에 대해 안내하고 설명하여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시설보호 실천강령은 승인절차, 주거기간과 조건, 일반적 관리, 신분보장 사생활과 개인의 자율, 재정, 건강관리, 임종과 죽음, 물리적 특징, 식이요법과 음식준비, 장애인, 정신이 손상된 사람, 정신장애인, 아동과 젊은 사람들, 노인, 직원, 기관의 책임의 분야로 나누어 총 218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 방대한 양이다(부록 2 참고). 평화의 집의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은 기본이념, 윤리강령, 직원으로서의 행동규범,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태도, 입주자의 존엄의 부분으로 나누어 총 66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미국 이용자의 권리는 기본적인 권리, 입소의 권리, 법률·사생활보호·비밀보장, 생활시설에서의 삶의 질, 생활시설과 보호, 돈과 재산의 보호, 의료보호와 치료, 감금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이동과 퇴소의 자

11) 김미옥(2006)외의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임

유로 나누어 이용자의 권리를 안내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영국, 일본의 윤리강령 및 미국의 이용자 권리 항목 모두가 각각 한국에 큰 시사점을 갖는다고 판단되나, 지면상의 한계로 인하여 몇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외국의 인권관련 지침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러나 특정나라 혹은 지역을 불문하고, 시설 실천강령, 기관의 직원윤리강령, 입소시 안내받고 동의해야 할 이용자의 권리는 그 자체로서 한국의 제도 및 기관 차원에서 벤치마킹되어야 할 것이어서 본 연구자료가 향후 제도 및 기관 차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종사자의 윤리 및 입소자의 권리

영국의 시설보호 실천강령과 일본의 직원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종사자들이 가져야 할 윤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시설보호 실천강령에서는 각기 다른 부분에 종사자의 윤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 평화의 집에서는 직원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윤리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6-1] 종사자의 윤리

영국	103. 클라이언트 집단과 상관없이 시설은 인식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거주자들의 개인적인 욕구에 반응하고 가능한 그들의 최대한의 성취에 대해 권능을 부여해야 한다.
	148. 직원은 민간성과 개인의 욕구를 존중할 줄 아는 성격을 갖도록 한다.
일본	149. 직원의 기술은 시설의 목적하에서 거주자의 욕구에 맞추어지도록 한다.
	150. 거주자가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이를 위해 직원은 유능하고 감각이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일본	제1조 우리 직원은 입주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권위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폭력, 폭언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제2조 우리 직원은 입주자의 개성을 이해하고 스스로가 선택, 결정한 것을 존중하며 항상 대등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대응해야만 한다.
	제3조 우리 직원은 입주자의 장애 상태, 행동, 성격, 성별, 연령 그 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절대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우리 직원은 입주자가 지역 사회 안에서 시민으로서 생활하기 위하여 항상 지역의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제5조 우리 직원은 입주자의 사생활 보호, 비밀 유지, 재정관리, 또한 사적인 공간과 시간의 확보를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6조 우리 직원은 항상 입주자의 소리를 잘 듣고 입주자의 고민이나 서비스 제공 요구에 대해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제7조 우리 직원은 입주자에 대한 격려와 칭찬을 잊지 않고 모든 입주자가 안심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입주자와 함께 만들어가야만 한다.
	제8조 우리 직원은 서비스 제공자로써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상 노력해야만 한다.

한편, 미국의 이용자 권리에서는 생활시설에 선택하거나 입소하기 전에 미래의 입소자로서 장애인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선언적 권리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및 입소의 권리를 명시한 이후, 이용자로서의 구체적인 권리영역을 법률·사생활보호·비밀보장, 생활시설에서의 삶의 질, 생활시설과 보호, 돈과 재산의 보호, 의료보호와 치료, 감금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이동과 퇴소의 자유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부록 참조). 특히, 기본적 권리에는 입소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입소의 권리에는 시설에서 제공해야 할 권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6-2] 입소자의 권리

미국	(기본적인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신은 개성과 취향을 인정받으며 존경과 존엄의 대상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 당신은 공정하고 차별이 없는 질 높은 보호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당신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는 친척들 혹은 법적 대리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입소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은 언어 혹은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시설은 이동 및 퇴소정책에 관한 것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의 규칙과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당신은 서명하기 전에 계약과 동의에 관해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요양시설은 지불을 위한 공동서명자를 요구할 수 없지만, 당신의 수입이나 자원에 대한 지불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당신의 친척이나 법적 대리인은 요청할 수 있다. · 당신은 Medicare와 Medi-Cal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와 이러한 프로그램의 참여에 대한 원조와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 당신이 Medicare나 Medi-Cal의 수혜자라면, 보증금에 관한 요청을 받을 수 없다.

2) 직원의 태도 및 행동

시설 내 입소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직원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행동을 모두 다 규정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활시설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가져야 할 태도와 지켜야 할 행동을 인식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영국의 시설보호 실천강령에서는 다음의 [표 6-3]와 같이 직원들이 시설내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어떠한 업무를 실행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예컨데, 159항의 규정과 같이 시설 종사자들이 클라이언트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다. 즉 이용자를 이동시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154항의 직무설명서 공개, 155항의 직원의 책임 한계 알려주기처럼 직원들이 생활시설에서 업무를 보는 것에

기본적인 태도로 갖고 있어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평화의 집 규정의 경우 직원이 생활인에게 대해 하는 행동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 평화의 집은 지적장애인시설이므로 직원들이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현재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 인권보장에 대한 내용에는 합의가 되어 있으나, 인권보장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일본의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는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은 앞으로 실제 장애인을 돌보는 생활재활교사 등을 상대로 하는 인권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 6-3] 직원의 태도 및 행동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4. 업무와 관련된 직무내용설명서는 모든 지위와 직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155. 직원이 책임을 지는 작은 시설에서는 직원이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156. 역할 또는 의무의 어떠한 변화든 서면을 통해 분명히 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157. 거주자에게 예상되는 문제에 언제라도 대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직원들이 배치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158. 직원의 배치는 요구사항의 기간을 높이 고려하도록 한다. 159. 생활인들을 들어 옮길때는 항상 적어도 두명 이상의 직원이 임무를 맡아야 한다. 160. 결혼한 커플들이 고용되었을 때에는 당번들이 할당된 시간이 공제되어야 한다. 161. 밤 근무자들은 경험이 많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어야 한다. 밤 근무자들이 충분히 경험이 없을 때에는 상급 직원이 불려 질수 있다는 전제로 한다.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는다. 2) 명령적인 어투로 어떤 행동을 시키지 않는다. 3) 변명을 하지 않는다.(상황 설명을 하고 본인의 이해를 구한다.) 4) 직원이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때는 사죄를 한다. 5) 목욕시 온수를 끼얹거나 할 때는 미리 말을 해둔다. 6) 식사 중에 약을 먹이지 않는다. 7) 직원실에서 입주자를 장제로 내보내려고 하지 않는다.(상황 설명을 하고 본인의 이해를 구한다.) 8) 입주자와 이야기를 할 때 손을 허리에 대고 있거나 팔짱을 끼고 말하지 않는다. 9) 입주자의 옷이나 소지품 등이 낡아서 폐기처분이 필요할 때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설명을 한다. 10) 입주자에게 주의를 줄 때 필요 이상으로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11) 식사 개호가 필요한 입주자의 경우, 식사를 시작 할 때 아무말 없이 식사를 입안으로 넣지 않는다. 12) 입주자를 방송으로 불러내는 것은 가능한 피한다. 13) 직원의 사정으로 서두르게 하거나 빨리 걷게 하고 싶을 때 등을 떠밀지 않는다. 14) 입주자에 대해 「좋지?」「알았지?」하고 무리하게 대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15) 밤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입주자에게 투덜투덜 주의를 주면서 무리하게 잠을 자게 하지 않는다. 16) 입주자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거나 거꾸로 움직이게 할 때 옷을 잡아끌거나 하지 않는다. 17) 입주자를 격려할 때 적절한 언어를 사용한다. 18) 입주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진지하게 대응한다. 19) 일상 생활에서 입주자가 가능한 부분까지 도와주지 않도록 한다. 20) 개호 등을 위해 할 수 없이 입주자의 행동을 구속할 때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제한한다. 21) 「나중에」라는 말로 넘어가지 않는다.

3) 직원과 기관의 의무

영국의 시설보호 실천강령에는 직원의 의무보다는 기관에서 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평화의 집 사례에서 입주자는 거주하는 기간동안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직원은 그것에 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기관 차원에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관 내의 규칙과 규정 등을 설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직원과 기관 모두가 시설 입소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 의무의 내용과 실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직원과 함께 시설장을 교육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표 6-4] 직원과 기관의 의무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0. 기관은 시설의 목적에 부합하는 보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181. 기관의 책임자는 그 일의 책임성과 적합한 능력과 경험을 가져야 한다. 다른 부문의 의무는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182. 기관은 법규와 지역상황에 맞는 문서화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187. 경영자는 기관의 능력과 사업방법을 이해한 것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188. 기관은 등록인정하기 전에 경영자가 등록을 취소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DHSS리스트를 체크해 확실히 한다. 190. 기관은 자원봉사 조직에 명백하게 정의된 책임의 현실적이고 합법적인 분할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1. 관리는 훈련에 근거한 전문적인 충고, 비용, 직원과의 약속을 고려해야 한다. 192. 진행하고 준비한 새로운 시설을 열었을 때에는 기관에 의해 감독되어야 한다. 194.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사회 서비스 담당 부서에 의해 교체되어질 때 거주자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195. 특별한 클라이언트 집단과 부가적으로 법적인 요구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보호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196. 지역사회내에서 이용가능한 전문가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경영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206. 기관은 적어도 12달 중에 한번은 법에 의해 시설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그것은 더 빈번히 방문할 것을 촉고한다. 207. 점검은 삶의 질, 거주자의 보호, 그리고 관리의 표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08. 체크리스트는 형식적인 연례시찰을 도울 수 있으나 토론 관리자와 사람들간 일상의 변화에 대해 체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209. 관리자는 점검시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의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210. 해마다 리포트로 쓰여진 리뷰는 관리자에게 보내야 한다.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원은 시간을 지킨다.(지각도 포함) 2) 어떤 일에 대해 교환 조건을 걸지 않는다. 3) 직원회의 등에서 이야기된 것을 모두에게 전달한다. 4) 입주자가 부르면 반드시 대답을 한다. 5) 각 집이나 식당 등에서 직원끼리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은 언어 혹은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기관은 이동 및 퇴소정책에 관한 것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의 규칙과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입주자의 자유존중

시설에 입소해 있는 입소자는 입소라는 환경 때문에 항상 자유를 존중하는데 다소 장애인이 있을 수 있다. 영국의 시설보호 실천 윤리강령이나 일본, 미국 모두 입주자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기관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표 6-5] 입주자의 자유존중

영국	35. 보행, 외부 방문 및 사회활동을 통해 거주자의 이동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한다. 36. 모든 거주자는 공동체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7.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활동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제공되어지고 존중되도록 한다. 38. 방문객은 가능한 시간에는 항상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39. 방문객과의 만남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주자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40. 관리자가 거주자의 방문객이 오지 못하도록 결정한다면, 관리자는 그 사실과 등록기관에 서 이러한 행동이 정당한지에 대한 기록을 할 수 있다.
일본	입주자의 여러 가지 권리를 직원이 지켜갈 수 있도록 모든 일과 속에서 직원은 자신이 입주자의 삶에서 서비스 제공자라는 존재 인식을 깨닫는다. 1. 입주자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에 관하여 1) 일과나 예정의 변경은 반드시 전달한다. 2) 직원회의 등에서 일방적으로 행사를 결정하지 않는다. 3) 식사 메뉴를 입주자와 상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4) 여행 일정 등을 직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입주자와 함께 의논한다. 5) 식사를 원하지 않을 때 강제로 음식을 입 안에 집어 넣지 않는다. 6) 하루 일과 중 입주자 혼자 지낼 수 있는 시간 등 선택의 폭을 넓힌다.
미국	· 가족과 친구들을 방문할 수 있다. · 시설 대리인 또는 개인적으로 건강, 법, 사회적 또는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과의 접촉을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5) 사생활 보호

시설에서 생활하는 입소자는 단체생활을 하게 되므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생활시설에서 인권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의 사례나 일본, 미국의 사례 모두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을 보장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6-6] 사생활 보호

영국	29. 장기보호 거주자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 한 그들의 방을 가질 수 있다. 30. 거주자의 방에서의 사생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31. 방을 함께 쓸 때에는, 각각의 거주자를 위한 개인적인 공간이 제공되도록 하고, 룸메이트나 다른 가구들로부터 사생활을 지킬 수 있다. 32. 침실과 거실 온도는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33. 거주자는 자신의 방이나 다른 편안한 장소에서 사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한다.
일본	1) 거실(혹은 집)에 들어갈 때는 노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함. 2) 입주자가 없을 때는 문을 닫아둔다. 3) 입주자가 옷을 갈아입을 때는 문이나 커튼을 닫는 등의 배려를 한다. 4) 입주자의 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5) 허락없이 방에 들어가거나 마음대로 서랍을 열지 않는다. 6) 거실에 견학자 등을 안내하지 않는다. 필요시에는 동의를 얻는다.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신이 누군가를 방문하거나 만나는 일,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는 등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 당신의 방에서, 목욕하는 동안, 의료적인 치료와 개인적인 불일 등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 당신의 사적인 그리고 건강에 관한 기록이 비밀보장되어야 한다.

6) 거주환경

시설 입소자는 가정 대신 집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주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 평화의 집에서는 거주환경에서 입주자의 삶이 안정되게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영국의 시설보호 실천강령에서는 물리적 환경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데, 일본의 규정에서는 휴일 아침에 자고 있는 사람을 무리하게 깨우지 않는다고 명시함하는 등 매우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방과 룸메이트 선정에서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면서, 안전하고, 편안하며, 집과 같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생활시설에서 추구하는 것이 집단생활이지만, 가능한 집과 같은 환경을 제시하고자 함을 유추할 수 있다.

[표 6-7] 거주환경

영국	<p>80. 시설 안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에서 자신이 선택한 취미나 흥미들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도록 한다. 아동들이 사용하는 곳은 숙제를 할 수 있는 방이 되게끔 한다.</p> <p>81. 시설은 획일화되지 않은 방식을 제공하도록 한다.</p> <p>82. 거주자들의 짐을 놓을 수 있는 창고를 제공하도록 한다.</p> <p>83. 모든 거주자들의 방은 최소한 안락의자, 수납공간, 옷장, 탁자가 갖추어져 되도록 한다. 또한 가구의 일부를 들여놓을 수 있게 한다.</p> <p>84. 성인과 청소년들의 방에는 전원 버튼이 접근 가능한 곳에 놓이게 하고 밝은 전구를 달도록 한다. 어린 아동들에게 이것은 접근 가능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p> <p>85. 거주자에게 침구류 선택권을 주어야 하고, 그러한 침구류는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한다.</p> <p>86. 거주자의 방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물질로 되어있도록 한다.</p> <p>87. 거주자는 방문에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하고, 원한다면 방문에 편지함과 자물쇠를 달 수 있게 한다.</p> <p>88. 각 침실에는 개인용 세수대야가 비치되어 있게 한다.</p> <p>89. 침실에 있는 세탁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커튼을 쳐야한다.</p> <p>90. 종합적으로 하나의 변기에 4명의 거주자의 비율이어야 한다.</p> <p>91. 8명의 거주자가 하나의 욕실을 사용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제공되어야 한다.</p> <p>92. 거주자가 사용하는 변기와 욕실의 비율은 직원이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p> <p>93. 욕실과 화장실의 적합한 위치는 거주자의 핸디캡을 초래하는 것의 최소한으로 계획되어야 한다.</p> <p>94. 세탁기는 그들의 개인적인 옷들을 세탁하기를 원하는 거주자들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p>
	<p>1) 휴일 아침에 아직 자고 있는 사람을 무리하게 깨우지 않는다.</p> <p>2) 목욕시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욕탕에 들여보내거나 서두르지 않는다.</p> <p>3) 안정된 환경에서 식사를 제공한다.</p> <p>4) 방의 이동 등과 같은 희망 사항을 최대한 받아들인다.</p> <p>5) 입주자의 생활 장소나 작업장을 시설 안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p>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신의 방과 룸메이트에 관해 선호도를 표현하고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기 전에 조언을 들어라 안전하고, 깨끗하고, 편안한 집과 같은 환경에 살 수 있다

7) 입소 및 퇴소의 권리

생활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시설을 찾고, 그곳에서 시험기간을 거쳐 살아보고, 입소를 결정하는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소에 대한 보장은 영국의 사고, 미국의 경우는 이동과 퇴소의 권리를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이동과 퇴소의 권리를 설정하고 있다. 예에서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이동과 퇴소의 권리를 설정하고 있다. 이동자는 시설을 옮기거나 퇴소하기 전에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며, 공식적 기관에 이동 또는 퇴소의 결정을 호소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있다. 또한 단기간 입원 또는 치료상의 휴가는 퇴소의 결정을 호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표 6-8] 입소 및 퇴소의 권리

영국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주거시설은 설립목적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담긴 팜플렛을 만들어야 한다. 거주자는 입소전 시설에 방문할 수 있으며,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다른 사람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시설에 단기간 동안 거주하는 사람이 장기간 거주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한다. 장기간 거주하기 위해 들어온 거주자는 입소한지 두 달이 지나면 입시입소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양방에 의해 동의되도록 한다. 임시 입소기간이 끝나면, 거주자의 욕구가 시설에서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거주자와 시설장, 중요한 후원자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신이 생활시설을 옮기거나 퇴소하기 전에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공식적 기관에 이동 또는 퇴소의 결정을 호소할 수 있다. 단기간 입원 또는 치료상의 휴가 후 생활시설로 돌아갈 수 있다(생활시설은 당신이 시설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와 침실을 유지해놓는 것에 관한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
미국	

8) 입소자의 연령에 따른 인권 보장내용

입소자의 연령에 따라 각기 다른 인권보장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 영국의 시설보호 실천강령에는 아동과 노인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분리하여 인권보장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임종과 관련되어 입소자들의 자유와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6-9] 입소자의 연령에 따른 인권 보장내용

영국	(아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들에게 그들의 상황에 대한 사실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욕구를 이해시켜야 한다. 장기간의 목표계획에 아동을 포함해야 한다. 계획은 아동에게 비현실적이어서는 안된다. 관리와 제재는 자존감을 건드려서는 안된다. 부모님과 접촉제한, 음식 뺏기, 그리고 다른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책임은 가족들과 공유해야 한다. 장애아동도 다른 아동과 같은 욕구, 그리고 가능한 모든 기회를 갖고 있다.
	(노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자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인식한다면, 정기적인 보호나 장례 또는 화장에 대한 그의 바람을 의뢰할 수 있다. 거주자의 임종시, 인척, 직원과 다른 거주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거주자의 죽음과 관련된 절차시 지역적, 문화적, 종교적 관습을 인정한다. 거주자의 가구배치는 혼란이 최소한으로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직원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쇠약한 노인들에 대한 욕구를 이해하고 훈련시켜야 한다. 신체적인 구속과 진정제에 의한 통제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9) 영역별 권리보장 내용

인권보장에 필요한 영역 중 영국의 시설보호 실천 윤리강령에서는 재정, 건강, 식사에 관한 부분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이용자의 권리는 기본적 권리와 입소권리를 제시한 후, 이용자의 영역별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위의 분석에서 제시한 것을 제외하고, 일부 영역을 제시하면 [표 6-10]과 같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고). 미국은 생활시설 삶의 질이라는 항목을 제시하여 일정 인권영역이 아닌 전체적 시각에서 이용자의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반면, 감금과 학대로부터의 자유를 명시하여 생활시설에 대한 현대적, 전근대적 시각 모두가 교차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6-10] 영역별 권리보장 내용

영국	(재정)
	42. 영구적으로 입소할 가능성이 있는 성인은 시설 등록에 앞서 유언장을 작성하게끔 권한다.
	51. 거주자는 18세 이상의 친척, 친구 또는 누군가를 지명하여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53. 자신의 재산관리를 위임하기 바라는 거주자는 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	(건강)
	56. 관리인과 직원은 거주자의 금전관리를 하지 않도록 한다.
미국	(건강)
	57. 모든 거주자는 공동체 안에서 건강서비스와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0. 치료에 동의하는 거주자가 의소소통이 불가능할 경우, 통역자를 통해 치료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64. 관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약물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이름을 붙여놓고 관리인이 권한을 부여한 책임감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관리한다.
	66. 규칙적인 약복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알린다.
	67. 약물은 사회적인 통제의 수단으로 관리해서는 안된다.
	(식사)
미국	96. 미리 만들어진 식사는 피해야 한다.
	97. 식사시간은 거주자들의 간식시간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
	99. 의학적 충고, 문화적, 종교적, 철학적 의미 또는 강하게 선호하는 것이 있을 경우 특별한 음식을 준비한다.
미국	(생활시설에서의 삶의 질)
	· 보호 계획의 일부분과 당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다.
	· 사회적, 종교적이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지역적, 국가 선거에 등록 및 투표할 수 있다
	·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건의사항 또는 불만사항을 얘기하라. 요양시설은 시설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 옴부즈맨 제도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거주인 집단에 참여하고 조직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은 요양시설의 가족 집단에 참여하고 조직할 권리를 갖는다.

3 인권과 친해지기

- ▷ 인권영역 : 평등권(차별 금지)
- ▷ 핵심주제 :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 프로그램 목표

-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모습을 통해 인권의 의미를 깨닫는다.
-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평등한 존재로서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깨닫는다.

□ 프로그램 개요

모둠유무	유(6인 1모둠)	소요시간	90분
준비물	〈활동자료 1, 2〉, 2절지, 그림도구(모둠별)		

□ 수행방법 및 역할

프로그램 내용	수행방법	진행자 역할	참여자 역할
1. 말발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자료 1'의 말발그림을 참고하여, 첫번째 말발 안에는 인간을 존중했던 모습을 기술하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유를 쓰고, 나머지는 그렇게 행동했을 때의 좋은 점을 적도록 한다. - 유형별로 각 상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생각해 보고 타당성에 대해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인 생활 모습에서 사례를 찾도록 한다. - 긍정적인 활동이 이미 존재함으로 깨닫도록 유도한다. 	
2. 말발공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자료 1'에 제시된 그림을 중심으로 모둠별 토의를 작성해 본다. - 진행자가 모둠별로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 정리한다. 		
3. 내가 생각하는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 대표가 순서대로 나와 자기 모둠의 내용을 1분 스피치한다.(10분) - 학습자들은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들으며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여 메모한다. 이때 '활동자료 2'를 이용한다. 		

□ 진행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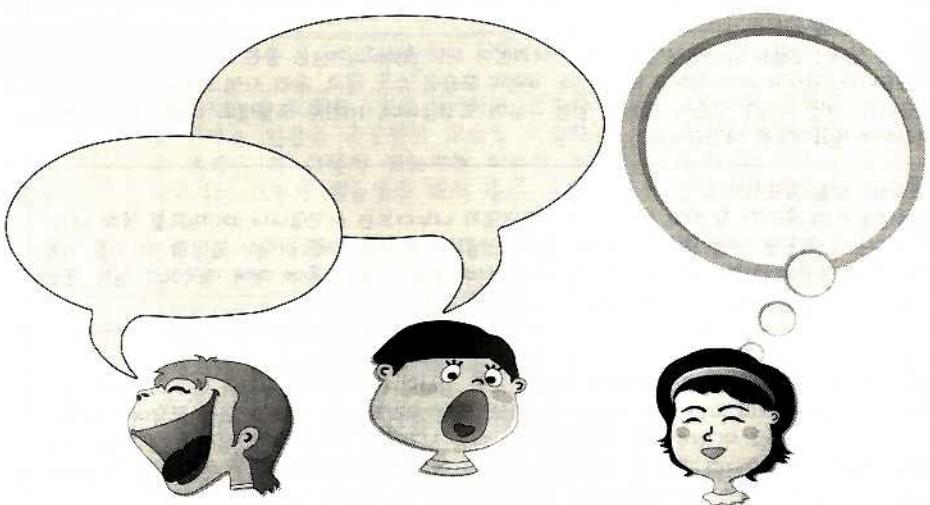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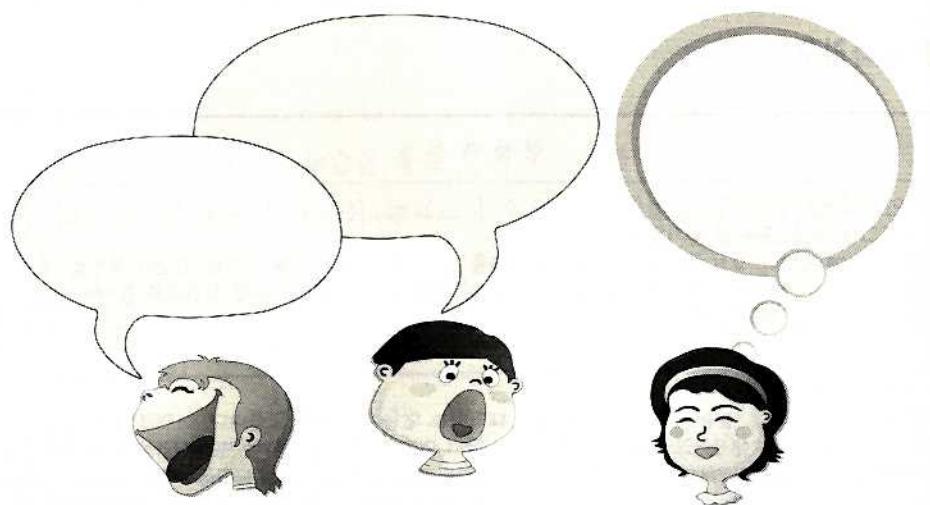
- 장애인생활시설에 근무하면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서비스의 모습이지만, 마음만이 아닌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인권이라는 것이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음을 느끼도록 한다.

□ 진행 시나리오

순서	진행 멘트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나누기 - 프로그램 목표 공유 및 동기유발 <p>앞선 시간에 인간이 갖는 특징과 존엄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은 인간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활 중에서 인권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p>	
활동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구〉 말발 만들기 <p>활동자료 1'을 보면 말발이라고 하는 세 명의 대화하는 인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인물 중 한명이 본인이라 생각하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빙고게임을 통해 여러 특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참조하면서 본인이 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해 참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명은 잘 했던 모습을 쓰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했는지의 이유, 세 번째는 그렇게 행동했을 때의 좋은 점을 적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편안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p>	
활동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말발 공유하기 <p>그러면 장애인생활시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이미 행하고 계시는 좋은 모습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이미 행하고 있는 것이 개인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시설 전체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다양한 모습이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10분후 모둠별로 1명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p>	
활동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말발 발표하기 <p>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잘 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나누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발표를 통해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발언할 때 귀를 기울이는 것은 토론의 기본자세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내용에 대해 메모하고 싶은 분은 '활동자료 2'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내용 정리와 과제 제시 <p>발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인권은 우리와 아주 먼 곳에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있고, 또한 우리가 이미 행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권을 위한 실천을 생각하는 자리 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함께 하면 더 잘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감사합니다.</p>	

【활동자료 1】

* 이미 존재하는 모습들... *



【활동자료 2】

* 이미 행하고 있는 모습 발표 내용 정리 *

4 인권온도 측정하기

- ▷ 인권영역 : 인권 전반
- ▷ 핵심주제 : 인권온도를 통한 시설내 인권상황 이해

□ 프로그램 목표

- 현재 시설의 인권온도를 측정하여 인권 분위기를 평가해 본다.
- 측정된 결과를 토대로 시설 전체가 인권 향상을 위한 목표, 전략 및 책임을 설정하여 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프로그램 개요

모둠유무	유 (6인 1모둠)	소요시간	90분
준비물	<활동자료 1, 2>, 필기구		

□ 수행방법 및 역할

프로그램 내용	수행 방법	진행자 역할	참여자 역할
1. 인권온도 측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자료 1>을 중심으로 시설의 인권분위기를 재보도록 한다. - 질문지는 개인별로 작성하고, 모둠별로 평균값을 계산하여 점수를 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들이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2. 주제 토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인권온도의 평균값에 대하여 <활동자료2>를 중심으로 토론한다. -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활동이 진행되면 진행자는 각 모둠을 순회하며 지도를 한다. 	

□ 진행시 유의사항

- 각각의 질문지에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 인권온도의 높고 낮음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하며, 핵심은 이후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임을 명심한다.

□ 진행 시나리오

순서	진행 멘트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 프로그램 목표 공유 및 동기유발 <p>이번 시간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시설의 인권 분위기를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어서 질문문항이 다소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인권온도'를 재 봄으로써 우리의 현재수준을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 어떤 영역에서 어떤 내용이 부족한지를 파악하여, 이후 인권실천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p>	
활동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인권온도 측정하기 <p>자, 지금부터 인권온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자료1'를 보시면 질문지가 있습니다. 질문지의 각 문장을 읽고 여러분의 시설에 대해 아래에 해당되는 점수를 빙 칸에 써 넣으시면 됩니다. 질문지 작성이 끝나면 모든 점수를 합산하여 여러분의 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p>	활동자료1
활동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주제 토론·발표하기 <p>인권온도를 모두 재보셨나요? 점수가 어떤가요?(반응을 본 후) 점수의 높고 낮음이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점수는 단지 숫자에 불과할 뿐, 그 점수가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제부터 모둠별로 '활동자료2'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인권온도의 결과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둠별 대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p>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 및 소감 발표 <p>오늘 활동은 어땠나요? 인권온도를 통해 우리 시설은 어떤 분야에서 인권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어떻게 하면 인권분위기를 조성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p>	

【활동자료 1】

* 우리 시설의 인권온도 측정하기(12) *

□ 측정방법

-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여러분의 시설에 대해 아래에 해당되는 점수를 빈칸에 써 넣으세요. 여러분의 시설 구성원, 즉 장애인·직원·관리자 모두를 고려하여 작성하십시오. 질문지 작성이 끝나면 모든 점수를 합산하여 여러분의 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하십시오.
- 점 수
 - 1 : 전혀 아니다.(전혀 / 거짓이다)
 - 2 : 드물다.
 - 3 : 때로 그렇다.
 - 4 : 항상 그렇다.(전혀 / 사실이다)
 - 5 : 모른다. : 해당 문제에 대해 답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측정문항

순번	질문내용	점수
1	우리 시설 구성원들은 인종, 성별, 가정배경, 장애, 종교 또는 생활방식을 이유로 차별받고 있지 않다.	
2	우리 시설에서 나는 안전하고 보호받는 느낌이 든다.	
3	모든 장애인에게 학습 및 진로 기회에 관한 정보와 지원을 등등하게 제공하고 있다.	
4	우리 시설에서는 모든 이들에게 동등한 접근권, 자원, 활동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5	우리 시설 구성원들은 시설에서의 차별적 행위, 차별적 내용의 프로그램, 그리고 차별적 발언에 반대할 것이다.	
6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반하면, 위반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태도를 고칠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도움이 제공된다.	
7	우리 시설 구성원들은 나의 개인적 발전뿐만 아니라 나의 인간적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12) David Shiman, '사회적·경제적 정의 : 인권의 관점에서' 발췌·인용

순번	질문내용	점수
8	갈등이 발생하면, 우리는 비폭력적이고 협력적인 방법으로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9	우리 시설은 차별과 관련된 정책 및 절차를 두고 있어서,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그러한 정책 또는 절차를 이용한다.	
10	정별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유죄 여부의 결정과 징벌 부과에서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처우가 보장된다.	
11	우리 시설에서는 어느 누구도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	
12	잘못을 저지른 혐의가 있는 자라도 유죄가 인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한다.	
13	나의 사적인 공간과 소유물은 존중된다.	
14	우리 시설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지닌 사람들을 환영한다.	
15	나는 차별에 대한 걱정없이 나의 신념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16	우리 시설의 구성원들은 겸열 또는 처벌에 대한 걱정없이 출판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17	프로그램과정, 계획서, 자료실 등에 다양한 관점(예를 들어 인종, 이념적 관점, 성)이 고루 존재한다.	
18	나에게는 시설내 문화적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나의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관은 존중받고 있다.	
19	우리 시설의 구성원들은 시설 정책과 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민주적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20	우리 시설의 구성원들은 시설내에서 자신의 권리 또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합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1	우리 시설의 구성원들은 불의, 환경, 빈곤 및 평화와 관련된 사회적·지구적 문제들에 대해 배우도록 서로 격려한다.	
22	우리 시설의 구성원들은 불의, 환경, 빈곤 및 평화와 관련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고 행동을 취하도록 서로 격려한다.	
23	우리 시설의 구성원들은 근무일 중에 적절한 휴식/휴무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정한 근로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길이의 시간을 일한다.	
24	우리 시설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 및 행복을 위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보수를 받는다.	
25	나는 우리 시설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총 합		
최대 인권 온도 = 100도		
우리 시설의 인권온도 = ?		

【활동자료 2】

* 인권온도에 대해 생각해보기 *

□ 토론 주제

- 우리 시설은 어떤 분야에서 인권원칙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
- 우리 시설은 어떤 분야에 인권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
- 문제가 되는 그러한 상황의 존재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차별과 관련이 있는가? 아니면 결정과정의 참여와 관련이 있는가? 이러한 인권침해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이며 손해(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 여러분 또는 이 지역사회에 다른 구성원들은 인권 상황을 개선 또는 악화시킴으로써 지금의 인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바 있는가?
- 우리 시설의 인권 분위기 개선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5 무엇이 문제일까?

- ▷ 인권영역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 핵심주제 : 장애인의 아픔을 생각하고 공감대 형성하기

□ 프로그램 목표

-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상황을 보다 전체적이고 정제된 그리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 인권의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침해와 침해자,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갈등요인을 찾아본다.

□ 프로그램 개요

모둠유무	유 (6인 1모둠)	소요시간	90분
준비물	〈활동자료 1, 2〉, 필기구		

□ 수행방법 및 역할

프로그램 내용	수행방법	진행자 역할	참여자 역할
1. 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정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자료1' 을 중심으로 인권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영역을 제시한다. - 인권영역에서 인권침해를 정의하고 그 예를 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생활 속에서의 침해를 찾도록 유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생활 속에서 장애인의 입장으로 기록한다.
2. 인권침해 상황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이나 영역 혹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본다. - 각각의 상황에서 갈등요인(딜레마)이 무엇인지 찾아본다. 		

진행시 유의사항

- 인권침해의 여러 범주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리고 특정한 인권 묶음의 부정은 다른 권리 묶음의 부정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유의한다.
 - 가능한 시설내에서의 실생활 속에서의 사례를 찾도록 유의한다.

□ 진행 시나리오

순서	진행 멘트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목표 공유 및 동기유발 <p>지난 시간에 인권과 친해지기 위해 나 자신, 시설, 지역사회에서 잘 지켜지는 것과 못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권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관계를 넘어서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는 당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 있어서 다수와 강자의 힘에 의해 인권이 규정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소수자·약자의 인권을 살피지 않으면 이들의 인권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이라는 공간으로 제한해서 인권을 정의하고, 인권침해를 정의하면서 침해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갈등요인, 즉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는 근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p>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레인스토밍 및 활동> 인권침해 정의 및 상황 그리기 <p>그러면 지금부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인권 소외 상황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은 인권보장이 잘 된다고 하여도 당사자의 입장에서 서서 보면 여전 영역들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인권에 대한 기본이해를 공부한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모둠별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p> <p>'활동자료1'을 참고로 인권의 영역을 제시하고, 각 영역에서 어떻게 인권침해가 나타나는지를 사례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그러한 인권침해를 하는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적으시고, 마지막에는 침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기록하시면 됩니다.</p>	활동자료1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감 나누기 - 활동 내용 정리와 과제 제시 <p>지금까지 인권과 시설에서의 침해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권의 개념 속에는 이해관계가 숨어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강자나 다수의 입장에 맞추어 편리한 대로 적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면 약자나 소수가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기에 사회적 약자 배려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어느 경우에나 약자들이 우선 배려될 때, 사회구성원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배려하는 인권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p>	

【활동자료 1】

* 인권 상황 정의하기 *

6 갈등 해결하기

▷ 인권영역 : 인권 전반

▷ 핵심주제 : 토론을 통한 인권침해 상황 및 해결방안 모색

□ 프로그램 목표

- 시설내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그 과정을 알 수 있다.
- 인권침해상황에서의 갈등요인에 대해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 프로그램 개요

모둠유무	유 (6인 1모둠)	소요시간	90분
준비물	〈활동자료 1〉, 필기구, 지난시간에 사용한 활동자료1		

□ 수행방법 및 역할

프로그램 내용	수행방법	진행자 역할	참여자 역할
1. 갈등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시간에 사용한 〈활동자료 1〉의 해결방안에 대해 모둠별 토론을 통해 논의토록 한다. - 갈등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타 권리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유도한다. 	
2. 발표자료 준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모둠에서 논의된 인권침해 사례와 갈등요인, 해결방안을 정리하여 다음 시간의 원탁토론에 제시할 자료를 준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 협력을 통해 발표자료를 준비한다.

□ 진행시 유의사항

- 모둠원들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토론과정이 중요함을 인지시킨다.
- 토론시간이 많음에 따라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 다음 시간에 진행할 원탁토론의 대표자를 사전에 선발하지 않는다.(이 경우 대표자만 준비하게 되는 함정에 빠진다.)

□ 진행 시나리오

순서	진행 멘트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 프로그램 목표 공유 및 동기유발 <p>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상황에 따른 갈등요인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인권침해 상황에 있어 갈등요소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협심하여 지혜를 모은다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p>	
활동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레인스토밍 및 토론〉 해결방안 모색하기 <p>앞서 5번째 교육에서 활용했던 '활동자료1'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의 각 영역을 기술하고 인권침해사례와 침해자, 갈등요인은 모두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방안이 비워져 있지요. 지금부터는 각 사안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모둠별 토론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할 것은 해결방안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이 되어야 하며, 한가지의 갈등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다른 권리영역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사물함검사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이 방치를 한다면 오히려 보호발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겠지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유로운 논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p>	지난시간에 활용한 활동자료1
활동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발표자료 준비하기 <p>어느정도 모둠별 논의를 완료한 모둠에서는 다음 시간에 진행될 토론에 대비하여 발표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모둠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원탁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탁토론의 참여자는 사전에 선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준비하시고 누구나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p>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 및 소감 발표 <p>이번 시간 활동을 해본 소감은 어땠나요. 어느정도 인권침해상황에 따른 갈등요인과 해결방안이 정리가 되셨나요? 무엇보다도 이런 토론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또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토론 이전과 토론 이후 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동안의 토론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솔직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p>	

7 인권 지킴이 되기

- ▷ 인권영역 : 인권 전반
- ▷ 핵심주제 : 시설생활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과 갈등요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리한다.

□ 프로그램 목표

- 시설장애인에게 필요한 권리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 프로그램 개요

모둠유무	유 (6인 1모둠)	소요시간	90분
준비물	〈활동자료 1, 2〉, 필기구, 메모지, 소박한 상품		

□ 수행방법 및 역할

프로그램 내용	수행방법	진행자 역할	참여자 역할
1. 함께 준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대표를 선발하여 원탁토론을 할 내용을 준비한다. 이때 지난 시간의 '활동자료 1'을 활용한다. - 가급적 다양한 영역의 인권침해사례와 갈등요인, 해결방안이 언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준비가 다 된 모둠은 다함께 박수를 쳐서 준비를 마쳤음을 알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실 앞쪽으로 원탁토론을 위한 자리를 준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권리가 무엇인지 찾아본다.
2. 대표가 앞장 서서 의견 발표하기 - 원탁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 대표가 순서대로 나와 자기 모둠의 내용을 1분 스피치한다. - 참여자들은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들으며 주장의 핵심을 정리하여 메모한다. 이때 '활동자료 2'를 이용한다. 		

프로그램 내용	수행방법	진행자 역할	참여자 역할
2. 대표가 앞장 서서 의견 발표하기 - 원탁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 대표들의 발언이 끝나면 대표들이 자유롭게 토의한다. - 청중들의 의견이 있으면 발표하고 필요하면 해당되는 대표가 대응 발언을 한다. - 진행자에게 활동지를 제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의 토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3. 전체 토의 및 활동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를 적어낸 최고의 발표자를 집계하여 최고의 발표자를 뽑는다. 발표자와 그 발표자를 배출한 모둠 전체에 간단한 상품을 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내용을 소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감을 발표한다.

□ 진행시 유의사항

- 반드시 토론 준비를 마친 다음 발표자를 선정한다. 발표자를 먼저 선정하면 토론 준비를 발표자가 모두 도맡게 될 우려가 있다.
- 최고의 발표자를 한명만 선정할 이유는 없다. 보다 여러 사람이 토론 과정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진행 시나리오

순서	진행 멘트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나누기 - 프로그램 목표 공유 및 동기유발 <p>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언급한 대로 인권침해상황에 따른 해결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p>	
활동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함께 준비하기 <p>각 모둠별로 힘을 합쳐 시설장애인을 위한 원탁토론을 준비합니다. 원탁토론은 각 모둠별 대표가 나와 모둠에서 토론된 내용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서로의 관점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모둠에서는 지난 시간에 준비된 '활동자료 1'을 최종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를 먼저 선정하지 말고 내용을 먼저 준비해 주십시오.(시간을 준 뒤) 이제는 발표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 선정까지 마친 모둠은 박수를 세 번 쳐서 준비가 다 되었음을 알려주세요.</p>	활동자료1
활동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대표가 앞장서서 의견 발표하기 <p>자기 모둠에서 토론된 내용을 발표할 때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은 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발표하는 해설방안이 시설장애인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해 주세요. 발표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이 발언할 때 귀를 기울이는 것은 토론의 기본자세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p>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감 나누기 <p>토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토론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실천이겠지요? 다음 시간에는 인권을 위한 실천을 생각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함께 하면 더 잘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p>	

【활동자료 1】

* 갈등요인 해결방안 발표 내용 정리 *

◆ 최고의 발표자는?

◆ 이유는?

【활동자료 2】

* 모둠 발표에 대한 의견 *

- 다른 모둠의 발표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자유롭게 메모해 봅시다. 정리된 내용을 쓰려고 하지 말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기술하면 됩니다.
 - ①번 칸에는 발표하는 모둠의 내용 중 특이한 점이나 기억할 만한 것을 간략하게 메모하고, ②번 칸에는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메모해 봅시다. ③번 칸에는 모둠의 발표가 끝난 후, 그 내용에 대해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 한 내용을 메모해 봅시다.

① () 모둠의 내용	② () 모둠의 발표를 보면서 떠오르는 나의 생각
③ () 모둠 발표가 끝난 후 다른 동료들과 함께 나눈 의견	

5 선물 준비하기

- ▷ 인권영역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법절차적 권리
- ▷ 핵심주제 : 장애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권리대변을 위한 실천의 필요성 인식하기

□ 프로그램 목표

- 장애인생활시설의 약자(장애인)에게 시급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 시설내 약자(장애인)를 위한 실천이 필요함을 안다.

□ 프로그램 개요

모둠유무	유 (6인 1모둠)	소요시간	90분
준비물	<활동자료 1, 2>, 2절지, 그림도구(모둠별)		

□ 수행방법 및 역할

프로그램 내용	수행방법	진행자 역할	참여자 역할
1. 시설장애인에게 필요한 것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시설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떠올려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적어본다. - 이때 필요한 것들을 글로 적을 수도 있고, 잡지 등에서 관련된 그림을 찾아서 붙일 수도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한 사항으로 진행에 주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기
2. 시설장애인에게 그림 선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자료 1'에서 표현된 장애인을 선정하여 그림 선물 편지를 그려본다. 즉 이 권리들을 가장 잘 상징하는 그림을 그리고 간단한 편지 글을 쓴다. 이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렵다면 잡지 등에서 필요한 그림이나 사진을 오려 붙여도 좋다. '활동자료 2' - '활동자료 1', '활동자료 2'를 벽에 붙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낭독시 감정이 복 받치는 경우에 대비하여 진행순서를 조정한다. 	

□ 진행시 유의사항

- 시설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이 법률적·정책적인 문제만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은 것이 있음을 알도록 지도한다.

□ 진행 시나리오

순서	진행 멘트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나누기 - 프로그램 목표 공유 및 동기유발 <p>이번 시간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처한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보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p>	
활동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구> 시설장애인에게 필요한 것들 <p>지금부터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중 한명을 떠올려 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설장애인의 아픔 찾기를 통해 나온 자료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충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p>	
활동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 시설장애인에게 선물하기 <p>여러분이 앞의 활동에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권리 목록 가운데 가장 시급하거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선물로 표현해 보십시오. 선물은 그림으로 그려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 봅시다. 그 선물의 취지를 담은 편지글을 쓰는 것이지요. 다 쓴 그림편지는 강의실 벽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p>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감 나누기 - 활동 내용 정리와 과제 제시 <p>편지글을 벽에 붙이면서 다른 분들이 작성한 내용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모둠내에서 동료들이 만든 권리 목록을 공유해 보면서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나누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적어 넣었지요? 다음 시간에는 이 편지의 내용을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p>	

【활동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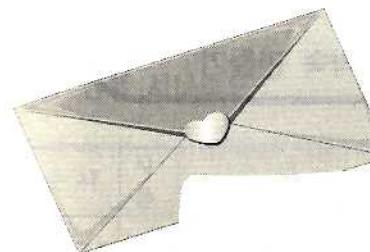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록 *

◆ 내가 관심을 갖는 시설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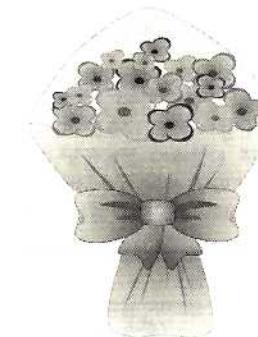
◆ 그에게 필요한 권리

【활동자료 2】

* 사회적 약자에게 보내는 그림 선물 편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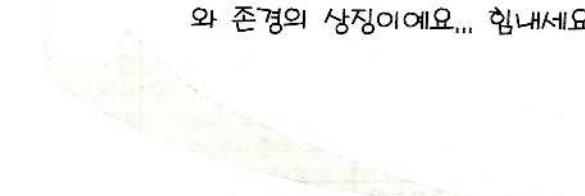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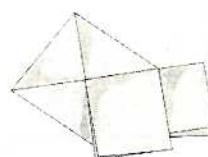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언제나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선물하고 싶어요. 비정규노동자들에게도 안정된 직장과 보수가 필요해요. 값진 노동에 걸맞는 사회적 평판과 대우를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이 꽃다발은 여러분들이 받아 마땅한 명예와 존경의 상징이에요... 힘내세요...



10 인권실천약속 만들기

- ▷ 인권영역 : 인권 전반
- ▷ 핵심주제 : 시설 장애인을 대변하기 위한 실천약속 만들기

□ 프로그램 목표

- 인권은 장애인 권리협약이라는 실정법적 근거를 갖고 있음을 이해한다.
- 인권선언은 현실 속에서 우리 인류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강령임을 이해한다.
- 우리 시설에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인권행동 실천약속을 함께 만들어 이를 선언해 본다.

□ 프로그램 개요

모둠유무	유 (6인 1모둠)	소요시간	90분
준비물	<활동자료 1, 2>, 필기구		

□ 수행방법 및 역할

프로그램 내용	수 행 방 법	진행자 역할	참여자 역할
1. 장애인 권리 협약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권리협약 조항들을 낭독해 보고, 가장 의미심장하게 읽혀지는 조항을 골라본다. - 장애인 권리협약을 큰 소리로 들려가며 낭독 한다. - 가장 의미심장한 조항을 선택하여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낭독시 큰소리로 의미를 부여하며 읽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자세로 임한다.
2.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인권 조항의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인권 조항을 읽어가면서 그 정신을 음미해 본다. - 헌법 전문과 인권 조항을 읽어본다. - 실현된 것 5가지, 실현이 먼 것 5가지를 선택 한다. 		
3. 우리시설 인권실천 약속 10개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모둠별로 시설에서 합의할 만한 인권실천약속을 만들어본다. - 발표를 하고 가장 잘 된 것을 투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내용이 도출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실천약속을 만든다.

□ 진행시 유의사항

- 장애인 권리협약 및 대한민국 헌법이 현실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선언과 규범이 하나의 행동원칙으로 자리 잡을 때 가능한 것임을 깨달아 나부터 실천하겠다는 자세를 고취하도록 지도한다.

□ 진행 시나리오

순서	시간	진행 멘트	비고
도입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목표 공유 및 동기유발 인권은 인간 노력의 산물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존엄성 구현을 위해 서로 약속한 선언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보장하지 아니할 인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간이 인권에 대해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 증표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증표들은 문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서들을 차차히 살펴보고, 그 정신을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선 여러분이 직접 선언문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자녀를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인권약속을 간단하게나마 만들어보고, 이를 계시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활동1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낭독> 장애인 권리협약의 이해 장애인 권리협약의 내용을 읽어봅시다. 읽을 때에는 비장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주기 바랍니다. 자구에 읽매이지 말고 글자 속에 놓은 정신을 음미하면서 낭독해주기 바랍니다. 다 읽었으면 주어진 질문에 답해보기 바랍니다. 	
활동2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구>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인권조항의 탐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기본법이고, 국가 기본 운영원리를 적은 최고법입니다. 우리가 인권을 말하면 그것의 근원은 헌법으로부터 나옵니다. 물론 헌법에 기술되어 있지 않다 하여 기본권이라도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에 열거되어 있을 때, 더욱 힘이 있는 기본권으로 보장받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헌법 정신을 기술한 전문과 인권 조항을 읽어봅니다. 각자 읽어보시고 주어진 질문에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활동3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레인스토밍> 장애자녀를 위한 인권 실천약속 10개항 만들기 앞에서 세계인권선언도 보고 헌법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헌법을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장애자녀들을 위해 꼭 적용해야 할 인권 약속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0개 항으로 된 인권헌법을 만들어보세요, 모둠별로 만들고 가장 잘 만든 조를 골라 시상을 하겠습니다. 	
정리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내용 정리와 과제 제시 지금까지 우리들의 인권 약속인 인권선언문과 헌법을 살펴보고, 장애자녀들을 위한 인권 헌법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인권실천약속이 하나의 종이 휴지에 불과하느냐, 우리들의 행동 원리가 되느냐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들의 삶의 원리로서, 그리고 도덕적 행위 실천 강령으로서 받아들인다면 인권 100% 세상은 빨리 닥쳐올 것이고,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느리게 닥쳐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삶터 곳곳에서 인권선언들을 지켜내고 실천해나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